# 일본의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에 관한 법제연구

- 국토계획과 지역 활성화의 관련성 -

정 명 운



# 일본의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에 관한 법제연구

- 국토계획과 지역 활성화의 관련성 -

A Legislation Study about the Base Maintenance for Regional Area Activation in Japan

 About a Land Development Program and Relevance with the Local Activation –

연구자 : 정명운(부연구위원)

Jung, Myeong-Un

2007. 11. 15.



## 국 문 요 약

현 정부는 2003년 출범에 있어 국가발전 비전과 목표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활성화」를 주요 정책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는 정책적의제로서 국가균형발전시책을 설정하였으며, 또한 법제적으로는 3대 특별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지역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에 있다. 그런데 정책의 추진과 설정에 있어 다음과 같은한계가 있다. 첫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활성화 정책을 국토계획 또는 국토이용이란 측면에서 보았을 때, 그 위치설정이 문제가 된다. 둘째,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지역간의 연계,나아가 지역을 넘어선 광역적 의미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지원 및재원확보가 모색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사항이 결여 되어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두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토계획이란 측면에서 2005년 종래의 『국토종합개발법』을 『국토형성계획법』으로 개정하여 장래의 성숙사회에 걸맞은 국토형성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7년 5월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에 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의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활성화를 국토계획이란 측면에서 일본의 국토계획과 국토형성계획 및 지역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제반 조치를 검토한다. 이를 통하여 향후 우리의 국토계획의 추진에 있어 그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 키워드: 국토계획, 국토균형발전, 지역 활성화, 광역적 지역 활성화

#### **Abstract**

The government aimed with a national development vision in 2003 and showed local activation for national balance development as a main policy. The government sets a national balance development measure as an aim of the policy to accomplish this and, in addition, I establish three major special laws for legislation and enforce it.

The effort of such government is to plan national balance development through local activation. By the way, there is the following limit in promotion and the setting of the policy. Primarily the positioning becomes a problem when I watched a local activation policy for national balance development at a land development program or the side called the country use. Second plan for activation of the meanings of the wide area beyond the areas and support and finance must be groped for cooperation between an area and the areas in its turn to plan local activation. Nevertheless it is lacked the matter of this purpose.

Japan takes measures of 2 for the development that there is the balance of the landing conjunction with this. It revises conventional multiple purpose development of the land method in country formation plan law at the side called landplane in 2005, and the country formation deserving to be the future maturity society takes measures of it. In addition, I establish "A law about the base maintenance for regional area activation" in May, 2007 to plan local activation and enforce it.

The Japanese land development program and land formation plan local activation for Korea balance development at the side called landplane in

this study and examine many steps to promote area activation. There is it for the purpose of what is going to get the current events point in future Korean landplane through this.

\* Key words: A land development program, land balance development, local activation, regional local activation

## 목 차

국 문 요 약	3
Abstract ·····	5
제 1 장 서 론	1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제 2 절 연구의 범위	14
제 2 장 일본의 국토계획 현황과 제도개혁	17
제 1 절 일본에서의 국토계획 현황	17
(1) 전국종합개발계획(1962년~1969년)	17
(2) 신(新)전국종합개발계획(1970년~1976년)	18
(3) 제3차 전국종합개발계획(1977년~1986년)	18
(4) 제4차 전국종합개발계획(1988년~1997년)	19
(5) 21세기 국토의 그랜드 디자인(1998년~2006년)	19
제 2 절 종래의 국토계획 관련 법령	22
(1) 국토종합개발법	22
(2) 국토이용계획법	25
제 3 절 새로운 유형의 국토계획과 법률제정	34
(1) 새로운 유형으로서의 국토형성계획	34
(2) 국토형성계획법	38
(3) 국토이용계획법의 개정	42
(4) 대도시권정비법의 개정	42
(5) 지방개발촉진법의 폐지	42

제 3 장 일본에서의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45
제 1 절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일본의 노력	45
(1)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법률의 제정	45
(2)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	46
제 2 절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서의 한계점	48
제 4 장 최근 일본에서의 지역 활성화를 위한 검토	51
제 1 절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에 관한 법률의 제정배경	- 51
제 2 절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1) 광역적 지역 활성화의 의미-광역적 특정활동과 거점시설(제2조)	
(2) 기본방침의 책정(제4조)	
(3)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정비계획의 작성(제5조・제6조)	
(4) 민간거점시설 정비사업계획의 인정 등(제7조~제18조)	
(5) 교부금의 교부(제19조~제21조)	55
제 3 절 지역자립·활성화 종합지원제도 등	55
(1) 지역자립·활성화교부금 ······	55
(2) 지역자립・활성화사업추진비	57
(3) 지역자립・활성화 지원출자업무	58
제 5 장 우리나라의 국토계획과 지역 활성화	61
제 1 절 우리나라의 국토계획체계	61
(1) 국토관리의 기본이념	61
(2) 국토관리의 방향성	62
(3) 국토의 이용 및 관리를 위한 국토계획의 체계	64
제 2 절 우리나라의 지역 활성화와 특색	

제 3 절 지역 활성화를 위한 성과와 개선점	· 72
(1) 지역 활성화를 위한 성과	· 72
(2) 지역 활성화정책의 개선점	· 73
제 6 장 시사점: 국토계획에 근거한 지역활성화를 위한 방안	- 77
참 고 문 헌	· 81
<부 록 1>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에 관한 법률	. 87
<부 록 2>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9
<부 록 3>	
지역자립・활성화교부금 교부요강	119
<부 록 4>	
지역자립·활성화사업 추진비 취급요령	133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현 정부가 2003년 출범하여 올해로 그 마지막 임기를 남겨놓고 있다. 정부임기기간인 5년이란 세월은 국가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젊을 수도 있고 길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시간적인 차이는 현 정부가 출범당시 공약한 사항을 얼마만큼 충실하게 이행하고 달성하였는 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이다. 즉 정부공약사항의 이행과 그 달성의 척도에 따라서 임기기간의 장단(長短)인식에 차이가 생긴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현 정부의 중요 정책사항은 무엇이었으며 그 것을 위해어떠한 노력과 힘을 기울여 왔고, 그 성과는 어떠한 유형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을까가 관건이 된다. 이에 관해서는 현 정부가 출범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 즉 정치학, 법률학,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세부적으로 논의 되어왔으므로, 본고에서는 그 대략적인 사항에 관해서만 고찰하기로 하겠다.

먼저, 현 정부의 중요 정책사항은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발전 비전과 목표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활성화」 정책<sup>1)</sup>이라 할 것이다. 이는 기존의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내재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대변화에 부응한 분권형 국가건설과 역동적인 사회건설을 통한 국가재도약의 실현에 있다고 하겠다. 즉 이러한 정책은 향후 우리나라가 지식기반시대의 도래로 경제활동체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면서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야만 지속적인 국가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인식하고지역균형발전을 국가적 중요 정책과제로 설정<sup>2)</sup>한 것이라 하겠다.

<sup>1)</sup>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으로서는 성경륭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한국행 정학회, 2003) p.5이하 참조.

<sup>2)</sup> 배준구 「참여정부 지역 균형발전의 추진과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중심으로」

이를 위하여 현 정부는 어떠한 노력과 힘을 기울여 왔는가라는 것이 두 번째 관건이다. 이에 관해서는 정책적 측면과 법적 측면으로접근할 수 있다. 전자의 관점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활성화정책을 파악하면 전국가적 의제로 국가균형발전을 설정하고 그 전략으로서 5대 중점전략을 추진하고 있다<sup>3)</sup>는 것이다. 즉, 과거에는 수도권억제를 통한 지역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국가발전을 모색하였다고한다면, 현행의 국가균형발전은 지역의 역량을 강화시켜 자생적인 지역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과 지역이 상호 연계되어 발전할수 있는 국가발전을 추진하고 있다.4) 그리고 이러한 중점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 하고 있다. 이것이 후자의 관점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목표의 설정과 추진체계를 구체화하여 노력한 현 정부는 어떠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세 번째 관건이다. 이에 관해서는 다각적인 관점이 있으나, 본고는 정치학적, 경제학적 측면이 아닌 법률학적 측면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활성화 정책의 고찰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 한 국가의 중요정책, 특히 체계적인 계획과 장기적인 안목을 바라보고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는 그 성과 또는 달성도를 논하여 그성패(成敗)를 가름하는 것보다 이것을 원활히 추진하여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활성화 정책의 한계 내지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적시하는

<sup>(</sup>서울행정학회,2004) p.445.

<sup>3)</sup>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시책과 추진내용에 관해서는 성경륭 전게(1) p.15참조.

<sup>4)</sup> 배준구 전게(2) p.446.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논하기로 하겠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활성화 정책의 한계 내지는 문제점에 관해서는 첫째, 이 정책의 위치설정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를 지적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 정책을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개발 및 보전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하면 국토계획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토계획은 주지하는 봐와 같이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함에 있어서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지향하여야 할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국토기본법 제6조제1항)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의 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을 중심으로 하위계획인 도종합계획, 시종합계획, 지역 및 부문별계획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 의하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의 활성화 정책 또한 지역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이를 위한 시책에 있어서는 상기의 어느 계획과 연계시켜 추진하여야 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관련 시책을 과거와 달리 지역이 스스로 수립한 발전방향과 계획을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관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천명하였을 뿐 국토계획과의 관련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두 번째 한계로서 사회적 변동에 대한 인식부족과 국가균형발전을 개발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은 그 목적에서도 파악할 수 있듯이 시대 변화에 부응하여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령자, 출생률의 저하 등 사회적 구조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국토균형발전을 개발중심의 계획으로 설정·추진하고 있어 장래의 성숙형 사회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국토이용 및 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셋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과 지역간의 연계, 나아가 지역을 넘어선 광역적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 종래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국토구조로부터 탈피하여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한 자립적인 지역형성은 물론이거니와, 이와 동시에 아시아 지역과의 물적·인적 상호교류, 연계를 통한 활력 있는 국토구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광역적 지역단위의 국토구조의 형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활성화 정책은 그 위치설정, 사회구조 변화의 고려 및 지역 활성화의 확대방 안에 있어서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고 국토균 형발전정책을 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는 발전방향에 맞는 국토계획으로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방향설정에 어느 정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와 같이 현재 지역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2007년5월18일 법률 제52호로 제정·공포된 일본의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에 관한 법률』의 제정배경, 법률의내용 및 향후 전개에 있어서의 과제 등을 통하여 일본이 어떠한 구상하에 국토계획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우리의 국토균형발전및 국토계획의 추진에 있어 그 시사점을 얻고자 함이 목적이다.

## 제 2 절 연구의 범위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활성화」정책은 현 정부의 중점적인 국 정과제이며, 또한 이것은 시대 변화에 부응하여 분권형 국가건설과 역 동적인 사회건설을 통한 국가재도약의 기반이 되는 것이라 하겠다. 환 언하면 이 정책은 국가가 재도약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역의 활성화 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모색하는 정책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은 단일계획으로서는 충분한 의미를부여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그상위계획인 국토계획과 연계되어야만 그 계획의 추진방향 및 성과가명확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토계획과의 연계가 중요한 관건이라하겠다. 그리고 국토계획은 그 시대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을 반영하여 국토가 지향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활성화」 정책은 상술한 바와 같이 한계 내지는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입법 및 제도운영이 우리에게 어는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최근에 시행 되고 있는 일본의 『광역적 지역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검토하기로 하겠다. 이에 관한 주요 연구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래 일본에서의 국토계획과 현행 국토계획의 변화에 관하여 서술한다. 여기에서는 일본이 어떠한 구상 하에 국토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과제는 무엇이 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둘째, 이와 관련하여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가 필요한 배경, 내용 및 지원책에 관하여 서술한다.

셋째,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진 하는데 있어 향후 전개되는 과제에 관하여 서술한다. 여기에서는 특히 지역과 지역을 블록단위로 형성하였을 경우, 우려되는 지역과 광역의 상충성 문제를 고찰하기로 하겠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국토균형발전 및 국토계획의 추진에 있어 그 시사점을 얻고, 개선방향 및 관련 법제의 정비방향을 제시하 고자 한다.

## 제 2 장 일본의 국토계획 현황과 제도개혁

일본의 국토계획은 주지하는 봐와 같이 1962년에 책정된 제1차 전국종합개발계획 이래, 국토종합개발계획법에 근거한 전국종합개발계획(이하「전총계획」이라고 함)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현재까지 5차에 걸쳐 책정되어 왔던 전총계획은 그때그때의 시대 요청에 응한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책정, 추진되어 왔다고 하겠다. 그런데 2007년부터 지금까지와 전혀 색다른 국토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장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종래 일본이 어떠한 구상과 목표 하에 국토계획을 책정, 추진하였는가에 관하여 현행의 국토계획의 현황을 개관한 후에, 관련법령 등을 고찰하기로 하겠다. 그리고 현행의 국토계획제도를 개편한 배경 및 신국토계획체계 이와 관련된 법률의 개정 내용을 고찰하기로 하겠다.

### 제 1 절 일본에서의 국토계획 현황

국토계획은 토지, 자연, 사회자본, 산업집적, 문화 및 인재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국토의 바람직한 방향을 나타내는 장기적·종합적·공간적인 계획이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국토계획에 관해서 일본은 전국종합개발계획을 책정하여 시행하여 왔다. 이하에서는 이에 관한 현황5)을 연차별로 개관하기로 하겠다.

## (1) 전국종합개발계획(1962년~1969년)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1950년대 전반 일본의 고도성장이 계기 가 되었다. 즉 고도성장의 과정에서 도쿄(東京), 오사카(大阪)에 젊은 층이 대량으로 유입해 인구 등의 집중에 의한 밀집의 폐해, 지역간격

<sup>5)</sup> http://www.mlit.go.jp/kokudokeikaku/21kokudo/sankou04.html.

차등의 여러 문제가 심각화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1962년 에 전국종합개발계획이 책정되었다.

전국종합개발계획에서는 도시의 과대화 방지와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할 목적으로 도쿄(東京), 오사카(大阪), 나고야(名古屋)의 기성 도시의 집적효과를 활용하기 어려운 지역을 개발 지역으로 설정하여 여기에 공업개발 거점을 정비(태평양 벨트지대 구상)해야 할 것 등을 분명히 하였다. 이것은 신산업도시로서 실시되어 공업의 지방 전개에 큰역할을 하였다.

#### (2) 신(新)전국종합개발계획(1970년~1976년)

1969년 사도우(佐藤)내각에 의하여 결정된 신전국종합개발계획은 예상을 넘는 고도성장에 의한 대도시에의 인구집중의 가속화와 과밀·과소문제가 한층 심각화 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된 계획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 국토에 개발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에 의한 국토이용의 균형화를 목표로 하였다. 수도 도쿄 (東京)로부터 삿포로(札幌), 후쿠오카(福岡)의 7대 집적지역을 교통,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국토의 주축을 형성함과 동시에, 이것과 각 지역을 종횡으로 연결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신(新)네트워크 정비등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의 계획을 책정하였다. 이 전국적인 네트워크의 정비도 차례차례 실시되어 국토의 주축이 형성 되었다.

## (3) 제3차 전국종합개발계획(1977년~1986년)

1960년대 후반에 들어 일본경제는 제1차 석유위기 등을 계기로 안정 성장 궤도로 이행 하였다. 이러한 중에서 1977년에 책정된 제3차전국종합개발계획은 종합적인 생활권 정비의 낙후를 강하게 인식하여 정주구상(定住構想)을 계획 방식으로 채용하였다. 그리고 대도시에의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는 한편, 지방을 진흥하고 과밀·과소 문제에 대처하면서 전(全)국토의 이용 및 균형과 인간 거주의 종합적 환경 형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에 의하여 1970년대에 들어와 3대도시권에의 인구 집중은 침정화하였으며 인구의 지방 정주가 진전되어 지역에 있어 스스로의 창의성을 살리면서 지역 만들기를 진행시키려고 하는 기운이 높아져, 지방의 거주 환경도 향상하는 등 정주구상은 진전을 보였다.

## (4) 제4차 전국종합개발계획(1988년~1997년)

새로운 국토계획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는 지역 활성화가 관건이기때문에 공업의 개발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진흥 시책의 전개가 필요하였다. 또한 지방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조기에완성시킬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나아가 도쿄(東京)를 중심으로 한 세계 도시 기능의 집중이나 본격적인 국제화의 진전에 적절히 대처해나갈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국토 계획의 책정이요구되었다.

이러한 취지하에 21세기의 국토 만들기의 지침으로서 특색 있는 기능과 특정 지역에의 인구 및 경제기능, 행정기능 등 제 기능의 과도 집중이 없고, 지역 간 국제간에 서로 보완·교류하는 다극분산형의 국토 형성을 목표로 제4차 전국종합개발계획이 책정되었다.

## (5) 21세기 국토의 그랜드 디자인(1998년~2006년)

21세기의 국토형성에 대한 구상은 다음과 같다. 국토구조형성의 흐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하여 우선, 도쿄(東京)를 정점으로 하는 「중추」와「의존」이라는 관계를 만들어 내 온 도시간의 계층 구

조를 「자립」과 「상호보완」에 의한 수평적인 네트워크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즉 「집중」과 「거대화」에 의해 집적 효과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광역에 있어서 각각 개성적인 지역간의 「제휴」와 「교류」에 의해 효과를 발휘시키는 것이었다.

또한 생산, 유통, 소비를 지지하는 기능을 효율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 풍족한 생활의 기초이지만, 자연 환경을 보전, 회복하는 기능, 새로운 문화와 생활양식을 창조하는 기능을 겸비한 다양성이 있는 지역만들기를 지향하는 것이 이 계획의 주된 목표라고 하겠다.

이상으로 일본에 있어서의 국토계획의 현황을 연차별로 개관하였다. 이것을 비교한 것이 표1이다.

표1 전국종합개발계획(개요)의 비교

	전국종합 개발계획 (전 총)	신전국종합 개발계획 (신전총)	제 3 차 전국종합 개발계획 (3전총)	제 4 차 전국종합 개발계획 (4전총)	21세기 국토의 그랜드 디자인
내각결정	1962년	1969년	1977년	1987년	1998년
	1. 고도성장	1. 고도성장	1. 안정성장	1. 인구, 제	1. 지구시대
	경제에의	경제	경제	기능의 동	(지구환경
	이행	2. 인구, 산업	2. 인구, 산업	경 집중	문제, 대경
	2. 대도시문	의 대도시	의 지방분	2. 산업구조	쟁, 아시아
	제, 소득	집중	산 조짐	의 급속한	제국과의
11) -zi	격차 확대	3. 정보화, 국	3. 국토자원,	변화에 의	교류)
배 경	3. 소득증대	제화, 기술	에너지 등	한 지방권	2. 인구감소・
	계획(태평	혁신의 진전	유한성의	에서의 고	고령화 시대
	양 벨 트 지		현재(顯在)	용문제의	3. 고도정보
	대구상)			심각화	화 시대
				3. 본격적인	
				국제화 진전	
목표연차	1970년	1985년	1977년부터 대략 10년간	2000년	2010년-2015년

	전국종합 개발계획 (전 총)	신전국종합 개발계획 (신전총)	제 3 차 전국종합 개발계획 (3전총)	제 4 차 전국종합 개발계획 (4전총)	21세기 국토의 그랜드 디자인
기본목표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	풍요한 환경창조	인간거주의 종합적 환경 정비	다극분산형 국토구축	다축형 국토 구조 형성의 기초만들기
개발 방식 등	건 작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u>프로 작상</u> 고의를 , 로진에 토제면 가는 어느를 가는 이용 및 경험 한 프루진에 보고 하는 이용 및 경험 함.	정주 시 안 인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교류 그상 워크 분 가 한 특 고 이 지 후 교통 전 또 선 도 여 로 교로 민의하 라 그 분 의 하 의 의 의 기 보 의 가 의 지 하 으로 하 기 지 후 교통 전 된 의 가 의 지 하 으로 하 를 방, 와 의 함. 의 하 의 하 의 가 의 지 하 의 하 의 하 의 하 의 하 의 하 의 하 의 하 의 하 의	산어촌, 중 산간 지역 등)의 창조 2. 대도시의 리노베 이 션(대도시 공간 수복, 갱신, 유효 활용) 3. 지역 연계 축 (지역 연계의 집

출전) 国土交通省国土計画局総合計画課「新しい国土形成計画について」(人と 国土21、2005)

#### 제 2 절 종래의 국토계획 관련 법령

국토계획과 관련해서 종래 일본은 『국토종합개발법』, 『국토이용계획법』 및 그 외의 법령에 의하여 계획을 책정·시행하여 왔다.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각각의 법령의 내용 및 특색을 고찰하기로 하겠다.

#### (1) 국토종합개발법

이 법은 국토의 자연적 조건을 고려하여 사회, 경제, 문화 등에 관하 시책을 종합적인 견지에서 국토를 종합적으로 이용, 개발 및 보전하여 산업입지의 적정화를 도모하고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1950년에 제정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법은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축으로 전국종합 개발계획, 도부현종합개발계획, 지방종합개발계획, 특정지역종합개발 계획을 작성하고 있다.6)

#### 1) 국토종합개발계획

국토종합개발계획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시책의 종합적·기 본적인 계획을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토지, 물 그 외의 천연자원의 이용에 관한 사항
- ② 수해, 풍해 그 외의 재해 방제에 관한 사항
- ③ 도시 및 농촌의 규모 및 배치 조정에 관한 사항
- ④ 산업의 적정한 입지에 관한 사항

<sup>6)</sup> 土地総合研究所『日本の土地法』(ぎょうせい、1996)p.37.

⑤ 전력, 운유, 통신 그 외의 중요한 공공적 시설의 규모 및 배치, 문화, 후생 및 관광에 관한 자원의 보호, 시설의 규모 및 배치에 관한 사항

#### 2) 전국종합개발계획

국가가 전국의 구역에 관해서 작성하는 종합개발계획을 말하며, 이 계획의 작성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국토교통대신은 관계 각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심의 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전국의 구역에 전국종합개발계획을 작성한다.
-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전국종합개발계획은 도부현종합개 발계획, 지방종합개발계획 및 특정지역종합개발계획의 기본으로 한다.
- ③ 국토교통대신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전국종합개발계획의 요지를 공표한다.

#### 3) 도부현종합개발계획

도부현종합개발계획이란 도부현이 그 구역에 관해서 작성하는 종합 개발계획을 말한다. 이 계획을 작성하는 도부현은 국토교통성대신에 게 보고하여할 의무가 있으며, 이하의 절차에 의한다.

- ① 국토교통대신은 보고를 받은 경우, 이것을 국토심의회에 자문함 과 동시에, 관계 각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를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견을 국토교통대신에게 제출하고, 국토교통대신은 이 의견을 종합하여 국토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4) 지방종합개발계획

자연, 경제, 사회, 문화 등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지역이 2이상의 도부현인 경우, 관계도부현은 협의에 의하여 지방종합개발계획을 설정하고 지방종합개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즉 지방종합개발계획이란 도부현이 2이상의 도부현의 구역에 대해서 작성하는 종합개발계획을 말한다. 이 계획의 작성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지방종합개발계획구역의 설정을 위한 관계도부현의 협의에 관해서는 해당 도부현의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국토교통대신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심의회의 의 견을 듣고, 관계도부현에 대해서 지방종합개발계획의 설정에 관 해 조언할 수 있다.

#### 5) 특정지역종합개발계획

특정지역종합개발계획이란 국토교통대신이 정하는 구역에 대해서 도부현이 작성하는 종합개발계획을 말한다. 이 계획은 자원개발이 충분히 이루어 지지 않은 지역, 특히 재해방재를 필요로 하는 지역 또는 도시 및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특별히 건설과 정비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 대해서 목표로 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 추진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 계획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서 작성된다.

- ① 국토심의회의 자문과 그 보고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대신이 지정할 수 있다.
- ② 국토심의회에 자문을 하려할 경우, 국토교통대신은 관계 각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함과 동시에, 관계도부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도부현의 동의에 관해서는 해당 도부현의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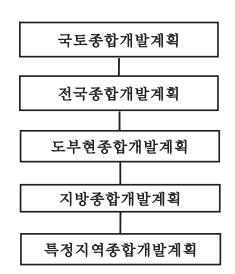


그림1 국토종합개발법에 의한 국토계획체계

#### (2) 국토이용계획법

이 법은 국토이용계획의 책정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토지이용기본계획의 작성, 토지거래규제에 관한 조치 그 외에 토지이용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 종합적·계획적인 국토의이용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1974년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또한 국토이용계획법은 「국토가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 국민을 위한 한정된 자원임을 인식하여 공공복지의 우선, 자연환경보전, 지역의 자연적·사회적·경제적 및 문화적 조건의 배려,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환경의 확보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이에 따라 동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은 다음과 같은 계획에 근거하여토지이용을 도모하고 있다.

#### 1) 전국계획

전국의 구역에 대해서 정하는 국토의 이용에 관한 계획으로서 정령 으로 정하며 국토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 이에 관한 절

#### 차는 이하와 같다.

- ① 국토교통대신은 전국계획의 안을 작성하고 내각의 결정을 받아 야 한다.
- ② 국토교통대신은 전국계획의 안을 작성할 경우, 국토심의회 및 도 도부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도도부현의 의견수렵 외에 도도부현지사의 의향이 전국계획에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대신은 전국계획의 안을 작성할 때는 국토이용의 현황 및 장래의 전망에 관해서 조사한다.
- ⑤ 국토교통대신은 전국계획에 대한 내각 결정이 있은 후 공표하여 야 한다.
- ⑥ 국토교통대신은 전국계획 안의 작성에 관한 사무 중 환경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은 환경대신과 공동으로 시행한다.

#### 2) 도도부현계획

도도부현계획이란 도도부현의 구역에 정하는 국토이용에 관한 계획으로서 도도부현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 계획은 전국계획을 기본으로 하며, 도도부현계획을 정할 때는 심의회 그 외에 합의제 기관 및 시정촌장의 의견을 들음과 동시에, 해당 도도부현의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에 관한 절차는 이하와 같다.

- ① 도도부현은 시정촌장의 의견수렴 외에 시정촌장의 의향이 도도 부현계획에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 도도부현계획을 정할 때는 국토교통대신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공표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대신은 도도부현계획에 관해서 보고를 받았을 때는 국 토심의회의 의견을 듣고, 도도부현에 대해서 필요한 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 ④ 국토교통대신은 도도부현계획에 관해서 보고를 받았을 때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있어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도도부현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있다.
- ⑤ 국토교통성대신은 의견신청이 있을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함과 동시에, 국토심의회의 의견을 듣고 도도부현에 대해서 필요한 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 2-1) 토지이용기본계획

이 계획은 도도부현계획과 별도로 도도부현이 정령으로 해당 도도 부현의 구역에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계획으로서 도 시지역, 농업지역, 삼림지역, 자연공원지역, 자연보전지역이 있다. 또 한 토지이용계획은 토지이용의 조종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정한 다. 따라서 이 계획은 이하의 절차에 의하여 정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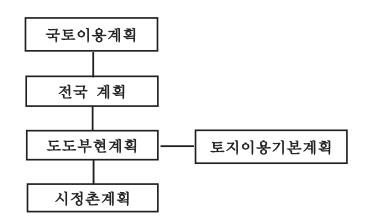
- ① 토지이용기본계획은 전국계획(도도부현계획이 정해져 있을 때는 전국계획 및 도도부현계획)을 기본으로 한다.
- ② 도도부현은 토지이용계획을 정할 경우 심의회 그 외의 합의제 기관 및 시정촌장의 의견을 들음과 동시에, 국토교통성대신과 협의하며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도도부현은 시정촌장의 의견수렴 외에 시정촌장의 의향이 토지 이용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대신은 동의하려고 할 때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 ⑤ 도도부현은 토지이용기본계획을 정할 경우, 그 요지를 공표하여 야 한다.

#### 3) 시정촌계획

시정촌은 정령으로 해당 시정촌의 구역에 국토의 이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시정촌계획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절차는 이하와 같다.

- ① 시정촌계획은 도도부현계획이 정해져 있을 때는 도도부현계획을 기본으로 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법제2조제4항<sup>7)</sup>의 기본구상에 맞추어야 한다.
- ② 시정촌은 시정촌계획을 정할 경우, 해당 시정촌의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시정촌은 시정촌계획을 정할 경우, 미리 공청회 개최 등 주민의 의향을 반영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④ 시정촌은 시정촌계획을 정할 경우, 공표하여야 한다.
- ⑤ 도도부현지사는 시정촌계획에 관해서 보고를 받았을 경우, 심의회 그 외의 합의제 기관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그림2 국토이용기본법에의한 국토계획체계



<sup>7)</sup> 일본 지방자치법 제2조 (지방공공단체의 법인격, 사무, 지방자치행정의 기본원칙) 제4항 「시정촌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며, 그 지역에서의 종합적·계획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구상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4) 그 외의 법령

#### ① 산업진흥 등을 위한 법령

저개발지역공업개발촉진법, 신산업도시건설촉진법, 공업정비특별지역정비촉진법, 농촌지역공업 등 도입촉진법, 공업재배치촉진법, 민간사업자의 능력 활용에 의한 특정시설의 정비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종합보양(保養)지역정비법, 다극분산형 국토형성촉진법, 지역거점도시지역의 정비 및 산업업무시설의 재배치의 촉진에 관한 법률, 특정농산촌지역에서의 농림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의 촉진에 관한 법률, 특정산업집적의 활성화에 관한 임시조치법, 중심시가지에서의 시가지 정비개선 및 산업 등의 활성화의 일체적 추진에관한 법률

#### ② 지역진흥을 위한 법령

특수토양지대재해방재 및 진흥임시조치법, 이도(離島)진흥법, 산탄(産 炭)지역진흥임시조치법, 산촌진흥법, 과소(過疎)지역활성화특별조치법 등

#### ③ 사회자본정비계획을 위한 법령

토지개량법, 어항법, 삼림법, 도로정비긴급조치법, 치산치수긴급조치법, 항만정비긴급조치법, 교통안전시설 등 정비사업에 관한 긴급조치법, 주택건설계획법, 하수도정비긴급조치법, 도시공원 등 정비긴급조치법, 폐기물처리시설정비긴급조치법, 연안어장정비개발법 등

이상의 내용을 종합ㆍ정리하면 이하의 표2와 같다.

표2 과거의 전국계획과 관계법령 등

발계획 - 신전 1 교형 · ·	
- 신전국종합개발계획 · 풍요로운 환경 창조	) 
- 제3차전국종합개 발계획 · 인간거주의 종 합적 환경 정비	
- 제4차전국종합개 발계획 · 다극 분산형 국 토 형성	부토이용계획법         974년)         1차국토이용계획 - 제2차국토이용계획         1차국토이용계획         지역의 지연적・       동좌(同左)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조         건을 배려하며,         적인 생활환경         의 확보와 국
-21세기 국토의 그 랜드 디자인 · 다극형 국토구 조를 지향한 장 기구상 실현의	- 제3차국토이용계획 동좌(同左)

	- 이지역거점도시지	음 역의 정비 및 산	6 업업무시설의 재	내기 촉진에 관	한 법률	) ○특정농산촌지역에	있어서의 농림업	활성화를 위한 기	반정비의 촉진에	관한 법률	○특정산업집적의	활성화에 관한임	시조치법	○중심시가지에 있	어서의 시가지 정	비개선 및 상업	등 활성화의 일	체적 추진에 관	今品
111	O민간사업자의 능	력활용에 의한 특	정시설의 정비촉	진에 관한 임시	조치법	○ 종합보양지역정	平	이다극분산형 국토	형성촉진법										
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 함	110		ŦII																
	○농촌지역공업등	도입촉진법	<ul><li>○공업재배치촉진법</li></ul>																
	〇저개발지역고업	개발촉진법	○ 신산업도시건설	촉진법	○ 공업정비톡별지	역정비촉진법													
									<b>7</b> 711		Jolo	ule							
									ار مر										

제2장 일본의 국토계획 현황과 제도개혁

O 과 소지 역활 성화 특별조치법	
	<ul> <li>○도시고원 등 정비긴급조치법</li> <li>○폐기물처리시설</li> <li>정비긴급조치법</li> <li>○연안어장정비개</li> <li>발법</li> </ul>
	○교통안전시설 등 정비사업에 관하 긴급조치법 ○주택건설계획법 ○하수도정비긴급 조치법
○산탄지역진흥임 시조치법 ○산촌진흥법	<ul> <li>○ 도로정비긴급조 치법</li> <li>○ 하산치수긴급조 치법</li> <li>○ 하만정비긴급조 치법</li> </ul>
○특수토양지대제 해방재 및 진흥 임시조치법 ○이도진흥법	<ul><li>토지개량법</li><li>이수본법</li><li>상림법</li></ul>
전 81 전 40	<b>小 图 水 型 咨 间 계 图</b>

자료) 국토교통성 「국토통계요람」을 근거로 국토교통성 계획·조정국 작성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개별적 계획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국토 종합개발법』, 『국토이용계획법』 및 『그 외의 법령』에 근간하여 국토 계획을 추진하여 왔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의 추진과 관련법령을 개관하고 비교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사항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종래 일본의 국토계획은 1) 그때그때의 사회적·경제적 필요성에 따라 책정되었고 실행되었다는 것이다. 즉 응급조치형 국토계획의 책정이 많았다. 2) 개발중심의 국토계획을 우선적으로 설정하고 추진하였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지역간의 격차확대와 과밀도시의 진전, 국가·지방재정의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경제발전 및 조화가 필요한 국토의 형성은 사실상 어려워 졌다. 이것은 국토계획의 이념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응한 국토계획에의 변화가 요구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1)과 2)에 대한 문제점을 수정하고 지역과 지역간의 연계를 통한 활성화 구축과 지역의 적극적인 국토계획에의 참가를 유도함으로써 국토형성을 도모함에 있다고 하겠다.

또한 이러한 국토계획의 책정 및 실행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전국적 규모의 계획과 지역의 활성화 내지는 특성화를 위한 계획과의 연계라고 하겠다. 그러나 종래 일본에 있어서의 국토계획은 이러한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다고 할 수 없겠다. 왜냐하면 전국적 규모, 환언하면 전국종합개발계획에 있어서는 국토의 지향할 방향을 국가의주도하에 체계적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한편 지역의 발전을위한 계획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상기의 계획을 통해서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토계획의 체계에서는 자립적인 지역계획에 의한 국토의 균형 있는 형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급변하는 사회변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본은 금년(2007년) 새로운 국토계획을 제시하였고 법률을 개정하였 다.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고찰하기로 하겠다.

#### 제 3 절 새로운 유형의 국토계획과 법률제정

일본에서의 새로운 유형의 국토계획에 관해서는 국토심의회 계획부회가 2006년 11월에 중간정리 한 「국토형성계획·중간보고」의 요지®를 참고하여 새로운 국토계획(이하「국토형성계획」이라 함)을 제시한배경, 개편 포인트, 국토형성계획의 이념 등에 관하여 고찰하기로 하겠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제정된 법률, 『국토형성계획법』을 이하에서 고찰하겠다.

## (1) 새로운 유형으로서의 국토형성계획

#### 1) 국토형성계획이 제시된 배경

지금까지 5차에 걸쳐 책정되어 온 전국종합개발계획은 지방분산, 중추·핵심 도시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보면 대도시에의 급격한 인구 유입 경향이 수습되었고, 지역간의 소득 격차도 축소되었다. 또한 지역적으로도 공공시설 정비와 정비 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던 것 등 생활환경의 개선도 크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의 책정과 운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① 도쿄(東京)와 태평양 벨트 지대에 치우친 구조가 시정되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② 지방권에서는 많은 지역이 과소와 중심 시가지의 공동화(空洞化)<sup>9)</sup>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③ 한편, 대도시에서는 방재상 밀집 시가지의 정비개선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 ④ 게다가 도시 교외에서의 시가지 확대・확산이나 농산촌

<sup>8)</sup> http://www.mlit.go.jp/kisha06/02/021116/03.pdf.

<sup>9)</sup> 인구감소 하에서의 국토계획에 관해서는 平 修久「人口減少下の国土計画」(都市計画第263号、2006) p.31이하 참조.

의 주변과 조화가 부족한 토지 이용으로 인하여 국토 전체의 경관이혼란해 졌으며, 토양오염, 수질오염, 불법투기가 사회 문제화하고 있다. 국토 정책에 있어서도 상술한 과제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유지가 곤란한 지역의 확대, 농지의 급격한 황폐와 적정하게 관리되어 있지 않은 삼림의 증대 등 중요한 과제가 표면화하고 있었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동아시아 경제권이 급속히 대두하고, 국경을 넘어선 지역간의경쟁이 활발해 짐에 따라 지역과 지역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해 졌다.이러한 국내적·국제적인 중요한 과제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국토계획에 있어서 국토 및 국민 생활의 장래의 모습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요구되었다는 것이 개혁의 배경이 되고 있다.

#### 2) 국토형성계획을 위한 개편 포인트

일본의 국토정책의 근간을 정하는 전국종합개발계획의 근거법인 국 토종합개발법은 제정된 1950년 당시의 사회·경제 및 정세 등을 배경 으로 개발을 기조로 한 양적 확대를 지향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방 분권이나 국내외와의 연계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국토의 질적 향상 도 모와 국민 생활의 안전·안심·안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성숙 사회 에 어울리는 국토의 비전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계획제도를 근본적으 로 재검토하게 되었다. 이에 관한 개편 포인트는 이하와 같다.

- 1. 양적 확대를 도모하는 「개발」을 기조로 한 지금까지의 국토 계획으로부터 국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획대상사항을 재검토하였다. 즉 국토의 이용, 정비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국토 계획으로 개편하였다.
- 2. 국토계획의 책정 프로세스에 있어서 다양한 주체의 참가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계획 제안제도나 국민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구조를 마련하였다.

- 3. 전국계획 이외에 블록 단위 마다 국가와 도부현(都府県)등이 적절한 역할 분담 하에 상호연계·협력하여 책정하는 광역지방계획을 창설하였으며 지역의 자율성 존중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파트너십의 실현을 도모하였다.
- 4. 국토계획체계를 간소화·일체화하는 것으로써 알기 쉬운 국토계 획체계로 재편하였다.

#### 3) 국토형성계획의 기본이념

상술한 국토계획의 개혁배경과 그 포인트를 근거로 하여 국토형성 계획은 다음과 같은 기본이념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 1. 인구 및 산업 동향 그 외의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에 적시에 대응하기 위하여 ① 특성에 따라 자립적으로 발전하는 지역사회, ② 국제 경쟁력의 강화 및 과학기술의 진흥 등에 의한 활력 있는 경제사회, ③ 안전이 확보된 국민생활, ④ 지구환경의 보전에 기여하는 풍부한 환경의 기반이 되는 국토를 실현하도록 국토에 관한 제조건을 유지ㆍ향상시키는 국토의 형성에 관한 시책을 국내외와 연계하여 확보ㆍ배려하면서 적절히 정하는 것.
- 2. 지방자치단체의 주체적인 활동을 존중하면서 전국적인 규모 또는 전국적인 시점에서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책의 실시, 그 외에 국가가 본래 완수하여야 할 역할과 국가의 책무를 완수하는 것.

이와 같이 일본에 있어서는 종래의 국토계획에 대한 반성과 향후 국토계획이 나아갈 방향, 즉 성숙사회에 적시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 토형성계획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내용을 간략히 나타내 면 표3과 같다.

## 표3 새로운 유형으로서의 국토형성계획

명 칭	국토형성계획(「국토의 종합적인 점검」으로부터의 상정)
내각결정	2007년
배 경	<ol> <li>급속한 인구감소와 고령화</li> <li>국경을 초월한 지역간 경쟁의 격화</li> <li>환경문제의 현재화</li> <li>재정 제약</li> <li>중앙의존의 한계</li> </ol>
목표연차	2020년 ~ 2025년
주 테 마	차세대에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기본목표	<ul> <li>※ 인구감소・고령화에 의한 경제사회에의 부하(負荷)가 본격화할 때까지의 전략적 대처방안을 제시(목표・과제)</li> <li>① 국토구조구축의 방향성         <ul> <li>광역 블록이 동아시아 각 지역과의 경쟁・연계를 시야에 넣고, 도쿄(東京)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자립적인 권역을 형성</li> </ul> </li> <li>② 광역 블록의 자립촉진을 위한 지원         <ul> <li>관민(官民)에 의한 지역전략에의 지원과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의 지원</li> </ul> </li> <li>③ 국토이용의 재편         <ul> <li>지역 블록을 유지하는 생활권역 형성</li> <li>지속가능한 아름다운 국토 형성</li> </ul> </li> <li>※ 자립권 연대형 국토형성구조</li> </ul>

- ① 지속가능한 지역 형성
  - 도시권구조의 재편과 지역간 교류
- ② 재해(災害)에 강하며 탄력성 있는 국토형성
  - 하드 · 소프트 충실
- ③ 심레스(seamless) 아시아의 실현
  - 동아시아와의 연계
- ④ 아름다운 국토 관리와 계승
  - 순환(循環)과 공생 중시
  - 지속가능한 국토 형성
- ⑤ 새로운 공공에 의한 지역 만들기
  - 지연형 커뮤니티와 NPO 등 민간활력 이용

注) 国土審議会計画部会의 중간보고를 참조하여 작성한 것임

이와 같은 계획의 책정과 더불어 강구하여야 할 사항은 계획의 구체화, 즉 법률에 근거한 계획내용의 명시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이 있는 법령에 관하여 논하기로 하겠다.

## (2) 국토형성계획법

종래 일본에 있어서의 전국종합개발계획은 1950년에 제정된 『국토종합개발법』을 근간으로 하여 추진되어 왔다. 이법은 주지하는 봐와 같이 개발을 기조로 한 양적인 확대를 지향한 것으로서 새로운 유형의국토형성계획, 즉 질적인 확대를 위한 국토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법률개정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이에 의하여 국토심의회의 검토를 통해 『국토종합개발법』을 개정하여, 2005년7월에 『국토형성계획법』이 성립되었다. 이하에서는 『국토형성계획법』의 주요내용을 고찰하기로 하겠다.10)

<sup>10)</sup> 国土交通省国土計画局総合計画課「新しい国土形成計画について」(人と国土21、2005)

#### 1) 국토종합개발법의 개정

#### ① 법률의 명칭 및 계획 명칭

- 1. 법률의 명칭을 「국토종합개발법」에서 「국토형성계획법」으로 개정
- 2. 계획의 명칭을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국토형성계획」으로 개정
- 3. 국토형성계획은 「전국계획」과 「광역지방계획」으로 함
- 4. 도부현종합계획, 지방종합개발계획, 특정지역종합개발계획을 폐지 함

#### ② 국토형성계획

「국토형성계획」이란 국토의 이용, 정비 및 보전(이하「국토의 형성」 이라 함)을 추진하기 위한 종합적·기본적인 계획으로 다음 사항에 관한 것을 의미함.

- 1. 토지, 물 그 외 국토자원의 이용 및 보전
- 2. 해역의 이용 및 보전(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사항을 포함)
- 3. 지진에 의함 피해, 수해, 풍해 그 외에 재해 방지 및 경감
- 4. 도시 및 농산어촌의 규모 및 배치의 조정, 정비
- 5. 산업의 적정한 입지
- 6. 교통시설, 정보통신시설,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시설 그 외에 중요한 공공시설의 이용, 정비 및 보전
- 7. 문화, 후생 및 관광에 관한 자원의 보전 및 시설의 이용, 정비
- 8. 국토에 있어서 양호한 환경창출 그 외 환경보전 및 양호한 경관 형성

p.12이하,小田清「国土総合開発法の改正と国土計画策定の問題点-国土形成計画法の制定に関して」(開発論集第79号、2007) p.7이하.

#### ③ 전국계획

#### 1. 계획내용

- ① 종합적인 국토형성에 관한 시책의 지침이 되는 것으로서 기본적 인 방침, 목표, 전국적인 견지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시책에 관하여 정함.
- ② 환경보전에 관한 국가의 기본적인 계획과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함.

#### 2. 작성절차

- ① 국토교통대신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며 도도부현 (都道府県)·정령시(政令市)의 의견을 듣고, 국토심의회의 심의를 걸쳐 계획안을 작성하여 내각의 결정을 받는다.
- ② 국토계획은 전국계획과 일체적인 것으로 작성한다.

#### ④ 전국계획에 관한 정책 평가

전국계획을 작성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는 정책평가법 에 근거하여 정책평가를 실시한다,

#### ⑤ 전국계획에 관한 제안 등

- 1. 도도부현·지정도시는 전국계획 또는 그 변경안의 작성에 관해서 소안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대신에게 제안할 수 있다.
- 2. 국토교통대신은 제안을 검토한 안의 작성을 하지 않을 때는 국토 심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에 그 취지 및 이유를 해당 도도보현·지 정도시에 통지한다.

### ⑥ 광역지방계획의 구역

수도권(사이타마 현(埼玉県), 도쿄도(東京都), 가나가와 현(神奈川県) 그 외에 정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일체로 하는 구역), 킨키권(近畿圈) (교토부(京都府), 오오사카부(大阪府), 효고 현(兵庫県) 그 외에 정령으로 정하는 현의 구역을 일체로 하는 구역), 중부권(아이치 현(愛知県), 미에 현(三重県) 그 외에 정령으로 정하는 현의 구역을 일체로 하는 구역) 그 외 2이상의 도부현의 구역으로 일체로써 종합적인 국토형성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구역(광역지방계획구역)에 관해서 광역지방계획을 정한다.

※ 홋카이도(北海道) 및 오키나와(沖縄)를 제외한 전국에 대해서 많 아도 10정도의 구역으로 구분할 예정.

#### ⑦ 광역지방계획

#### 1. 계획내용

광역지방계획구역에 있어서 국토형성에 관한 방침, 목표, 광역의 견지에서 필요한 주요 시책(특히 필요가 인정되는 구역 외에 것도 포함)을 정한다.

#### 2. 작성절차

국토교통대신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광역지방계획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계획을 작성한다.

#### ⑧ 광역지방계획협의회

1. 광역지방계획 및 그 실시에 관해 협의하기 위하여 광역지방계획 구역 마다 국가의 지방 지분부국, 관계도부현, 관계지정도시로 되는 협의회를 설치한다.

2. 협의회는 구역 내의 시정촌(市町村), 구역에 인접한 지방자치단체, 지역 경제계(界) 그 외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자(者)를 협의회에 참가시킬 수 있다.

#### ⑨ 광역지방계획에 관한 제안 등

- 1. 시정촌은 광역지방계획의 책정 또는 변경에 관해 초안을 첨부하여, 도부현을 경유해서 국토교통대신에게 제안할 수 있다.
- 2. 국토교통대신은 제안을 검토한 후 변경하지 않을 때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에, 그 취지 및 이유를 해당 시정촌에 통지한다.

# (3) 국토이용계획법의 개정

국토이용계획법은 국토형성계획법에 의한 조치에 상응하도록 종합 적·계획적인 국토의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4) 대도시권정비법의 개정

- 1. 수도권, 킨키권(近畿圈) 및 중부권의 사업계획을 폐지하며, 3권의 계획은 수도권정비계획, 킨키권(近畿圈)정비계획, 중부권정비계획으로 일원화를 도모한다.
- 2. 3권의 정비계획은 국토형성계획과의 조화가 유지되도록 한다.

# (5) 지방개발촉진법의 폐지

토호쿠(東北)개발촉진법, 큐슈(九州)지방개발촉진법, 시코쿠(四国)지방개발촉진법, 호쿠리쿠(北陸)지방개발촉진법, 쥬우고구(中国)지방개발촉진법은 폐지한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국토계획을 형성하기 위하여 종래의 계획을 대폭적으로 수정하였다. 이것을 종합·정리한 것이 아래 표4이다.

표4 국토계획제도의 재편

새로운 국토계획	국토이용전국계획	(일체적작성)	<b>作</b> 埘	₹ 98 × 08	(A) 对 (A)	· fp	医内骨骨	- 10Jr
	'국토형성계획(전국계획)		수도권정비계획	; ; ; ; ;	킨키권정비계획	중부권개발정비계획	신제도로 흡수	
		国 习 国 入	계획투합	7	법 개 정 폐 지	페 지	田田田	題名
현행의 국토계획	국토이용계획전국계획 전국 중합계발계획 도 부 현 종 합 계 획	지 방 중 합 개 발 계 획	기본계획 정비계획(5년)	를 제 획(매년 - 기 : 기 : 기 : 기 : 기 : 기 : 기	기본정비계획사업계획(매년도)	기본개발정비계획 사업계획(매년도)	동 북 개 발 촉 진 계 획 북육지방개발촉진계획 중국지방개발촉진계획	사국지방개발촉진계획 구주지방개발촉진계획
	전 나		수도권		킨키권	중부권	지병	

**含** 名)国土交通省国土計画局総合計画課「新しい国土形成計画について」(人と国土21、2005)

이상으로 일본에서의 국토계획 현황과 제도개혁 등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일본이 종래의 국토계획에서 새로운 유형의 그것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은 상술한 바와 같이 성숙사회에 알맞은 국토계획을 추진하여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법률의 개정을 실시하였고 국토계획체계를 개편하여, 지역에 의한 지역을 위한계획수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적 지방계획을 광역적 지방협의회와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sup>11)</sup> 물론 이러한 제 조치는 새로운 유형의 국토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필요한 요소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사항은 아니다.계획을 초기에 의도하는 목표로 진행하여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지역과 지역과의 연계, 나아가 지역을 넘어선 광역이 활성화 되어야만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일본이 어떻게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지향하여 왔는지에 대해서 논하기로 하겠다.

<sup>11)</sup> 이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국토형성법에서는 5전총에 서 명기되었던 국토이용계획의 근본적인 검토가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또한 광역 적 지방계획에 있어서도 대도시권의 개별계획법이 존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국 토이용계획법과의 합체를 포함한 근본적인 검토는 실행되지 않고, 국토형성법에 의 한 전국계획의 조항에「전국계획은 국토이용계획법제4조의 전국적인 구역에 관해 서 정하는 국토의 이용에 관한 계획과 일체를 이루어야 한다(제6조제7항)」고 하여 계획의 일체화를 규정하는 것에 그쳤다. 그리고 광역적 지방계획협의회의 논의가 현존의 중부권 협의회제도와 같이 원안작성에까지는 미치지 못한고 있으며, 3대 대 도시권에 관해서는 종래의 개별계획법이 존속되어 있어 광역계획이 2중으로 작성 되고 있다. 또한 중부권에서는 종래의 협의회도 조직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논의와 의사결정의 장소가 2중으로 되어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관해서는 大西 隆「広域地方計画の展望と課題」(都市問題、2005年7月) p.11-14참조, 다른 각도에서 문 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문헌으로서 林 宜嗣「地方分権と国土形成計画-全国計画と広 域地方計画の課題と展望」(都市計画第263号、2006) p.21이하 참조, 瀬田史彦「国土・広 域計画体系からみた国土形成計画の可能性と課題」(都市計画第263号、2006) p.27이하 替本、小田 清「国土総合開発法の改正と国土計画策定の問題点-国土形成計画法の制定 に関連して-」(開発論集第73号、2007) p.11이하 참조.

# 제 3 장 일본에서의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국토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장래의 사회적 변동에 적시한 계획의 책정과 시행이며, 이를 통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에 관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국토이용의 과도의 편재를 고쳐 지역이 고르게 잘살아 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12)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의 개념을 「지역의 특성을 살린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역의 발전 없이는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대할 수 없으며, 지역의 활력이야말로 국가원동력의 기초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것은 국토계획에 있어서도 지역의 활성화의 중요성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지역진흥을 위하여 종래 어떠한 노력을 하여 왔으며,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먼저 고찰한 후에, 최근 일본의 경향을 고찰하기로 하겠다.

# 제 1 절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일본의 노력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일본은 입법적·정책적으로 다음 과 같은 노력을 하여 왔다.

# (1)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법률의 제정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의 제정은 크게 지역 의 특성과 개별적인 정책목적을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 분류할 수 있

<sup>12)</sup> 伊藤敏安「地方にとって「国土の均衡ある発展」とは何であったか」(第11回地域経済, 2002) p.3.

다.13) 또한 이러한 법률은 각각 그 대상에 따라서 세분화 된다.

먼저 전자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세부적으로 개관하면 4가지의 유형이 있다. 즉 대도시권에 있어서는 수도권정비법, 킨기권(近畿圏)정비법, 중부권(中部圏)정비법을, 지방권에 있어서는 각각의 지역별로, 예를 들면 홋카이도(北海道)부터 오키나와(沖縄)에 이르기까지 개발촉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또한 특정지역에 관해서는 쯔쿠바(筑波)연구학원 도시건설법, 관서문화·학술연구도시건설촉진법 등이 있으며, 지역진흥을 위하여 산탄(産炭)지역진흥임시조치법, 과소(過疎)지역활성화 특별조치법 등을 제정하였다.

둘째, 후자, 즉 개별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산업도시건설촉진법, 공업정비특별지역정비촉진법, 다극분산형 국토형성촉진법, 지역거점도시지역의 정비 및 산업업무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의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특정 농산촌 지역에 있어서의 농림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 특정산업집적의 활성화에 관한임시조치법, 중심시가지에 있어서의 시가지 정비개선 및 상업 등의활성화의 일체적 추진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었다.

# (2)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

일본에서의 지역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지방분권과 더불어 중요한 관건으로 되어 왔으며, 이것을 내각의 주요과제로 삼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은 코이즈미(小泉)내각(2001년~2006년)에 있어서이다. 즉 지역의 활력을 국가 활력의 원천으로 생각하고 지역의 활력 없이는 국가의 활력을 기대할 수 없다고 여겨왔다. 이를 위하여 코이즈미내각은 이하와 같은 정책을 전개하였다. 14)

<sup>13)</sup>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国土審議会政策部会土地政策審議会計画部会 2000년 11 월 6일 審議会報告書참고자료참조. http://www.mlit.go.jp/kokudokeikaku/21kokudokeikaku\_soukatsu.pdf.

<sup>14)</sup> http://www.kantei.go.jp/tiiki/index.html.

첫째, 지역의 자원·특성을 활용한 도시재생을 추진하였다. 이 정책은 관·민·관계행정기관이 총력을 기울여 추진하는 국가 프로젝트로서 관·민 연계체제를 정비하여 목표설정, 규제완화, 제도개정 등에의한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또한 민간도시개발투자를 촉진시키기위하여 도시재생 긴급정비지역으로서 전국에 64지역을 지정하였고,도시재생특별조치법을 제정·시행하였다. 그리고 지역이 자기 스스로생각하고 행동하는 도시재생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만들기 교부금」(2006년 약2,380억 엔)을 활용하여 전국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둘째, 구조개혁특구에 의한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지방자치단체·민간 등으로부터 규제 특례조치를 제안 받아 특례조치를 활용한 구조개혁특구계획을 인정하였다. 예를 들면 환경·리사이클 경제특구(兵庫県姫路市), 고령자 및 장애아를 위한 복지서비스 추진특구 (富山県富山市), 국제물류특구(北九州市)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중심시가지의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이것은 인구감소·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지역 만들기로써 시정촌이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 본계획을 작성한 후, 중앙행정기관이 중심시가지의 기본계획을 인정 하여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넷째, 국제경쟁력이 있는 관광지를 책정한 지역에 소프트·하드면에서 지원하였다. 이를 위하여 관광르네상스 사업, 비지트 재팬 캠페인, 자매도시교류, 청소년교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다섯째, 지역재생에 의한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지역재생을 위해서는 인재양성, 재정, 민간의 노하우활용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즉 인재양성을 위해서 선구적인 NPO 및 고용창출의 활동을 지원하고, 대학과의 연계에 의한 지역재생을 촉진하였다. 또한 지역재생을 위한 교부금과 보조시설의 전용(轉用)절차의 일원화를 실시하였다. 그

리고 지역에 공헌하는 회사에의 투자를 촉진하였으며 일본정책투자은 행의 저리(低利)에 의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의 지역 활성화 정책으로서 농산촌에 의한 지역 활성화, 대학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지역의 특산품 만들기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고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입법적으로나 정책적으로도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책은 책정과정과 운용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이에 관하여 다음절에서 논하기로 하겠다.

# 제 2 절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서의 한계점

지역의 활성화를 통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일본의 제 조치에 대해서는 이하의 한계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지역의 특성과 개별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률이 대체적으로 초기의 전국종합개발계획을 전후하여 제정되었다는 것이다. 즉 대도시권의 정비에 관한 법률, 지방권의 개발촉진을 위한 법률, 특정지역을 위한 법률 및 지역진흥을 위한 법률이 1950년부터 시작하여 1960년대의 중반에 대체적으로 제정·시행되었다. 이것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개발에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환언하면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은 국토개발에 의하여 달성되며, 이를 통한 지역의 활성화를 꾀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국토계획의 본래의 의미를 상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지역별로 지역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지역 과 지역간의 연계·교류가 부족하며, 또한 지역 활성화 정책이 도시 부와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것은 지역 활성화를 통한 지역재생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셋째,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기관과 결정기관의 상이함을 둘수 있다. 지역의 자원·특성의 활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등으로부터 정책을 제안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종적인 결정은 중앙행정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절차에 의하면 지역의 특성을 살린 계획의 수립이 곤란하며, 지방의 자율성과 자립에 의한 지역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것은 결국 지역의 활성화를 중앙행정기관에 의존하게 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넷째,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의 용어의 개념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즉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이 「국토의 균형」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토이용의 균형」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가령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의 의미가 전자라고 한다면 이것은 전국이 전부 균형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된다. 또한 전국의 균형 있는 발전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다.

한편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이 후자의 의미라면 이를 위한 수단으로서 지역의 활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일본의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있어서의 한계점에 관하여 논하였다. 이에 의하면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 해서는 용어의 개념이 명확하여야 하며, 지역이 자립적인 계획추진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지역의 지속적인 발 전을 위해서는 지역과 지역간의 연계·교류를 통한 국토의 형성이 요 구된다고 하겠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본의 경향을 논하기로 하겠다.

# 제 4 장 최근 일본에서의 지역 활성화를 위한 검토

국토이용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본은 종래의 국토종합개발법을 국토형성계획법으로 개정하였으며, 이에 관해서는 제2장에서 상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은 최근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였다. 이하에서는 이 법률의 제정배경, 주요내용 및 특색을 개관하기로 하겠다.

# 제 1 절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의 제정배경 15)

제165회 국회에서 아베(安倍)내각총리대신의 소신표명연설(2006년9월29일)에 의하여 지역 활성화 추진이 내각의 중요과제로 되었다. 이를 위해 각종의 지역 활성화정책에 관해서 관계행정기관의 연계를 확보하고, 정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하여 정부가 일치단결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되었다.

한편, 2005년의 국토형성계획법 성립 후, 국토심의회 계획부회에 있어서 국토형성계획 전국계획의 책정을 위한 검토가 실시되었으며, 2006년 11월 중간정리가 보고되었다. 중간정리에서는 도교(東京)를 중심으로 하는 태평양벨트지대에 인구와 제 기능이 집중하는 국토구조로부터 지역블럭자립형의 국토구조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지역블럭자립형이란 즉, 유럽의 한 국가와 유사한 인구·경제규모를 갖고, 아시아지역 등과의 직접적인 연계를 심층화하고 있는 각 지역 블럭이 각각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지역전략을 수립하고, 도교에 과도히 의존하지 않는 자립적인 권역을 형성하는 국토구조를

<sup>15)</sup> 大森麻衣 「地域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に係る交付金制度創設-広域的地域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に関する法律案」(立法と調査、2007) p.66.

말한다. 또한 중간정리에서는 이러한 블록의 상호교류·연계에 의한 활력 있는 국토구조를 지향하여야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블럭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국가는 국토형성계획지방계획에 근거한 국가경 쟁력의 강화 등을 지향한 중점정책<sup>16)</sup>과 관민에 의한 지역전략을 유지하며, 이것을 효율적·효과적으로 실현하기위한 지원에 관해서 검토·실현하는 것으로 되었다.<sup>17)</sup>

이러한 배경 하에 국토교통성은 2007년도 예산에 있어서 광역적 활동의 촉진을 위한 기반정비 등의 일체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제도로써 지역자립·활성화교부금, 지역자립·활성화추진비로 되는 지역자립·활성화종합지원제도를 창설하였다. 본제도 중에서 지역자립·활성화교부금의 교부계획을 정함과 동시에, 민간사업자가 실시하는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활동의 거점이 되는 시설의 정비에 관해서인정·지원제도 등을 정하는 『광역적 지역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에관한 법률』이 제166회 국회에 제출되어 2007년 5월 제정·공포되었다.

# 제 2 절 광역적 지역 활성확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본법은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촉진하기위한 활동으로서 광역적 특정활동과 거점시설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기본방침의 책정, 도도부현이 작성하는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정비계획에 근거한 민간거점시설정비사업계획의 인정제도 및 거점시설관련기반시설정비사업 등

<sup>16)</sup> 동북아시아의 환경변화와 지역적 개성을 살린 국제경쟁력강화라는 측면에서 다음의 문헌을 참조하기 바람. 太田 誠「東北アジアの環境変化と地域的個性の発揮-企業の国際ネットワークの視点と物流インフラ整備-」(都市計画第263号、2006) p.37이하, 宮本 恭「地域の自立と国土形成計画」(都市計画第263号、2006) p.49이하, 中島俊介「広域地方計画に向けて」(都市計画第263号、2006) p.53이하 참조.

<sup>17)</sup>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国土審議会計画部会 2006년 11월의 중간정리보고 참조. http://www.mlit.go.jp/kisha/kisha06/02/021116/03.pdf.

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위한 교부금제도 창설 등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구성되어있다.<sup>18)</sup>

# (1) 광역적 지역 활성화의 의미 - 광역적 특정활동과 거점시설(제2조) -

본법에 있어서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촉진하여야 할 활동으로서 「광역적 특정활동」이 정해져 있다. 광역적 특정활동이란 광역으로부터의 방문자의 증가, 광역에 걸친 자원의 유통을 촉진하는 활동 및 당해 활동과 방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이러한 활동 등의 기초를 유지하는 운송사업으로 되어있다. 구체적으로는 (1) 국제적 또는 전국적인 규모의 회의, 연수회, 전시장 또는 스포츠협의회의 개최, (2) 주요 관광지에 있어서의 관광안내, 숙박 그 외의 편의제공에 관한 사업활동, 문화적 자산의 전시 또는 전통예술공연, (3) 고등교육단계에서의 교육활동, (4) 국제적 또는 전국적인 규모의 공업제품제조에 관한 사업활동 또는 공동연구개발, (5) 이러한 것에 유사한 것으로서 성령(省令)으로 정하는 활동, (6) (1)~(5)의 활동을 하는 자(者) 또는 방문자의 편의를 위한 운송에 관한 사업활동으로 성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본법에서는 광역적 특정활동의 거점이 되는 시설을 「거점시설」로 정의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 회의장시설, 연수시설, 전시장시설 또는 스포츠시설, (2) 하나의 단지의 관광시설(안내시설, 숙박시설등), 교양문화시설(미술관·박물관, 극장 등), (3) 교육시설, (4) 공업단지, 연구개발시설, (5) 성령으로 정하는 활동의 종류마다 성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되어있다.

<sup>18)</sup>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国土交通省 http://www.mlit.go.jp/pubcom/pubcom85\_html 참조.

# (2) 기본방침의 책정(제4조)

국토교통대신은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반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또한 기본방침은 국토형성계획 전국계획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본법이 종합적인 국토이용, 정비 및 보전의 추진에 관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제정되었으며, 종합적인 국토의 형성에 대해서 전국적인 견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책을 정하는 국토형성계획전국계획의내용에 맞추어 작성되는 것이 적당하기 때문이다.

# (3)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정비계획의 작성 (제5조·제6조)

도도부현은 기본방침에 근거하여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정비계획 (이하「기반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다. 기반정비계획에는 계획목표를 기재함과 동시에, 민간사업자 등이 정비를 실시하는 거점시설 또는 거점시설의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일체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 도도부현 사업(이하「거점시설 관련기반시설정비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거점시설 관련기반시설 관련기반시설 관련기반시설 관련기반시설 관련기반시설 관련기반시설 장비사업이란 구체적으로 도로, 하천, 철도, 항만, 공항, 하수도, 주택, 공원정비, 토지구획정리사업, 시가지재개발사업 등이다.

# (4) 민간거점시설 정비사업계획의 인정 등(제7조~ 제18조)

기반정비계획에 기재되어있는 거점시설의 정비에 관하여 사업을 실 시하려고 하는 민간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국토 교통대신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인정을 받은 경우 그 계획과 관 련되는 사업에 관해서 민간도시개발기구에 의한 금융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인정사업자는 도시계획결정권자에게 필요한 도시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음과 동시에, 광역지방계획위원회에 대해서 필요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 (5) 교부금의 교부(제19조~제21조)

국가는 도도부현에게 기반정비사업에 근거한 거점시설 관련기반정비사업 등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당해 교부금을 충당하여 실행하는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에 관해서는 도로법 그 외의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부담 또는 보조는 당해 규정에 관계없이 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2007년도 예산으로 창설된 본교부금의 특색은 기반정비사업에 기재된 여러 가지 사업을 일괄해서 채택하기 위하여 어떠한 사업에 어느정도 충당할 것인가는 도도부현의 판단에 의한 것이 특색이다.

# 제 3 절 지역자립 · 활성화 종합지원제도 등19)

# (1) 지역자립 · 활성화교부금

# 1) 지원조치를 설정하는 취지 및 개요

생산·물류기능의 강화, 관광 활성화, 도시·농촌교류의 촉진 등 거점이 되는 시설에서 행해지는 광역적인 사람의 왕래와 물류의 교류를 통한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반정비를 지원한다.

<sup>19)</sup> http://www.kantei.go.jp/jp/singi/tiikisaisei/kouhyon/070427/2\_1\_40.pdf p.1-2.

#### 2) 지원조치의 내용

도도부현이 작성한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정비계획에 근거하여 도도부현이 실시하는 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 보조금을 교부 한다.

#### [대상사업]

#### 가. 기간사업

- 도로, 철도, 공항, 항만
- 공원, 하수도, 하천, 주택, 토지구획정리사업, 시가지재개발사업(거 점시설의 정비가 행해지는 경우에 한함)

#### 나. 제안사업

- 기간사업과 일체가 되는 것으로서 실시되는 도도부현의 제안에 의한 조사, 소프트사업 등
  - ·계획에 근거한 복수의 사업에 대해서는 교부금을 일괄해서 교부 한다(교부율 약45%).
  - ·계획에 기재된 대상사업에의 국비 충당은 자유로움.
  - 연도도중의 사업 간의 국비융통에 관련되는 변경절차가 불필요함.
  - ·교부금을 교부하는 기간은 대략 3~5년 정도이다.

## 3) 지원조치에 관련되는 필요한 절차

교부금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는 도도부현은 광역적인 지역 활성화에 관한 목표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시설의 정비사업 등을 기재한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대신에게 제출한다.

국토교통성은 교부금의 교부가 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부금을 교부한다.

구체적인 절차에 관해서는 근거법령이 시행되기까지 요강·요령 등에서 정하고 있다.<sup>20)</sup>

## (2) 지역자립·활성화사업추진비<sup>21)</sup>

## 1) 지원조치를 설정하는 취지 및 개요

도도부현이 작성한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정비계획과 관련하는 국가 등에 의한 기반정비사업 등(공공사업관계비에 관련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 2) 지원조치의 내용

본 추진비는 이월(移越)등 연도도중에 필요에 대응한 기동적(機動的)인 예산조치를 실행하기 위한 「목적미정의 경비」이다.

국고보조율 등은 배분처의 기존제도에 따른다. 이에 의하여 기존제도의 국비분은 본 추진비로, 지방부담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 3) 지원조치와 관련되는 필요한 절차

본 추진비의 배분을 받으려고 하는 사업주체는, 국토교통성이 정하는 시기에 사업소관 부성(府省)을 통해서 국토교통성에 요구서를 제출한다.

그 후, 국토교통성이 재무성과 협의 하고 승인을 얻은 후에 배분한다. 요구서의 모집시기와 모집에서 배분에 이르기 까지 구체적인 절차

<sup>20)</sup> 부록 3참조.

<sup>21)</sup> 전게(19) pp.2-3.

등 상세한 사항에 관해서는 지역자립·활성화 교부금의 근거법령이 시행되기까지 요령 등으로 정하고 있다.<sup>22)</sup>

# (3) 지역자립 · 활성화 지원출자업무23)

## 1) 지원조치를 설정하는 취지 및 개요

생산·물류기능의 강화, 관광 활성화, 도시·농촌교류의 촉진 등 거점시설의 정비사업에 관해서 국토교통대신의 승인을 받은 민간사업자에 대해서 민간도시개발추진기구(이하「민간기구」라고 한다)가 당해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출자 등에 의하여 지원한다.

## 2) 지원조치의 내용

이하의 요건을 충족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실시한다.

## [사업요건]

대상사업 :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에 관한 법률에 근 거하여 국토교통대신의 인정을 받은 민간거점시설정비 사업

대상구역 : 도도부현이 작성하는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정비계획 에 기재된 중점지구의 구역 내

사업규모 : 사업규모 면적이 원칙적으로 0.5ha이상

# [지원조치]

지원방법 : 출자 또는 신탁수익권의 취득

지원요건 : 대략 10년 이내의 배당 등을 실행할 수 있는 전망이 있

는 것

<sup>22)</sup> 부록 4참조.

<sup>23)</sup> 전게(19) pp.3-4.

출자 등의 한도액: 이하의 액수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한다.

- 가) 자본금의 50%
- 나) 총사업비의 50%
- 다) 공공시설 등(도로, 광장, 주차장, 피난시설, 소방시설 등) 정비비

#### 3) 지원조치와 관련되는 필요한 절차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국토교 통대신의 인정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대신이, 출자 등의 신청 등에 관 해서는 민간기구에 의한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의 역할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그리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제 조치에 의한지역 활성화정책, 특히 「광역적」지역 활성화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며, 이것이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먼저,「광역적」지역 활성화의 의미를 상술한 내용으로부터 도출해 내면, 광역적 특정활동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기반정비의 추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광역을 대상으로 한 교류인구의 확대가 지역 간의교류를 도모하면서 각 지역에 있어서의 자원을 상호 활용한 지역 활성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즉 광역적 지역 활성화란 이러한 광역에 걸친 활발한 사람의 왕래 또는 물자의 유통을 통하여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과소화, 출생률 저하·고령화가 심각한지방에 있어서는 광역으로부터의 사람의 방문에 의한 교류의 활성화,경제활동의 활성화,지역활동,교양문화·스포츠활동의 충실 등을 위하여 외부로부터 지역을 방문하는 교류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되어있다.

광역적 특정활동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에 관한 각 제반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으나, 이에 앞서 사회자본정비·교통분야에 있어서는 광역적 특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점시설의 정비와 그 활동을 유지하는 공공시설의 정비를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sup>24)</sup>고 하겠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마련한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미를 갖는 「광역적」지역 활성화가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것이 두 번째이다.

이에 관해서는 지역을 블록, 광역단위로 분류하여 상호 연계·교류를 통한 지역의 활성화를 추진하여 국토이용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환언하면 종래에 개별적으로 시행되어 왔던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이를 위한 법률의 범위를 넘어 광역적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여 국토이용을 효과적·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일본의 지역 활성화정책은 현재 우리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다음 장(章)에서는 우리의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sup>24)</sup> 大森 전게(15) p.67.

# 제 5 장 우리나라의 국토계획과 지역 활성화

## 제 1 절 우리나라의 국토계획체계

우리나라에 있어서 국토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토기본법』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본법을 중심으로 국토계획의 체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개관하기로 하겠다.

## (1) 국토관리의 기본이념

국토기본법제2조에서는 「국토는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며 후세에 물려줄 민족의 자산이므로,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도모할 수 있도록 이를 수립·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는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으로서 1) 개발과 환경의 조화, 2)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3) 경쟁력 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4) 지속가능한 국토의 발전을 들고 있다. 이 다섯 가지의 기본이념은 다시 국토관리의 기본원칙과 방향성의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전자에 해당하는 것이 1)이며, 후자에 관한 것이 2)~4)이다. 이에 관해서는 후술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1)에 대하여 부연하기로 하겠다.

국토계획 및 정책에 있어서 개발과 환경의 조화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즉 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한다.<sup>25)</sup>

<sup>25)</sup> 정태용 『국토계획법』(한국법제연구원, 개정2판, 2007) pp.36-37.

- ①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
- ②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위
- ③ 교통·수자원·에너지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초서비스의 제공
- ④ 주거 등 생활환경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⑤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보전
- ⑥ 지역 간 협력 및 균형발전을 통한 공동번영의 추구
- ⑦ 지역경제의 발전 및 지역 간·지역 내 적정한 기능배분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 하에 국토의 나아가야할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2)~4)이다.

# (2) 국토관리의 방향성

국토기본법에서는 국토관리의 방향성<sup>26)</sup>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1)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법제3조에서는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이 특성에 따라 개성 있게 발전하고, 자립적인 경쟁력을 갖추도 록 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정되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국토여

<sup>26)</sup> 정태용교수는 국토관리의 방향성을 국토관리의 기본원칙이라 하고 있다. 정태용 전게(25) p.37이하 참조.

건을 조성하야야 한다(동조제1항)고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으로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산촌·어촌, 대도시와 중소도시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룩하고, 생활여건이 현저히 뒤떨어진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동조제2항). 또한이러한 사항은 지역간의 교류협력과 촉진, 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에 의하여 지역간의 화합과 공동번영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동조제3항)고 하고 있다.

#### 2) 경쟁력 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경쟁력 있는 국토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기간시설의 확충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법제4조에서는 경쟁력 있는 국토여건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즉 국토의 기간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는 교통운송 및 사회기반시설에 있어서의 네트워크화가 중요하며, 또한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국토의지리적 특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국제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국토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3)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환경친화적 국토관리를 위해서는 국토계획에 관한 계획이나 사업을 수립·집행함에 있어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여야 하며,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제5조제1항). 또한 국토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국민생활에 필요한 토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토지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국토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한다(동조제2항). 이러한 내용은 자연생태계를 통합적으로 관리·보전하고 훼손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

함으로써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쾌적한 국토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동조제3항)고 하겠다.

이와 같은 국토관리의 방향성의 특색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책무가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상술한 각각의 사항들은 국가의 주도하에 의해서만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달성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있어서 지방의 역할이증대되고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에 근거한 국토계획은 어떠한 체계를 형성하여 국토의 이용 및 관리를 도모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개관하기로 하겠다.

## (3) 국토의 이용 및 관리를 위한 국토계획의 체계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함으로써 장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고 국토가 지향하여야할 발전방향을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국토계획이 시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현행의 국토기본법은 이하와 같은 체계 하에 국토의 이용 및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 1) 국토계획의 구분

국토계획은 국토종합계획·도종합계획·시군종합계획·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계획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 리를 목적으로 수립·시행되고 있다.

① 국토종합계획 :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 ② 도종합계획 : 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당해 지역의 장기 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 ③ 시군종합계획: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당해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교통·환경·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문화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립되는 도시계획
- ④ 지역계획 :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 ⑤ 부문별계획 :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부문에 대한 장기적 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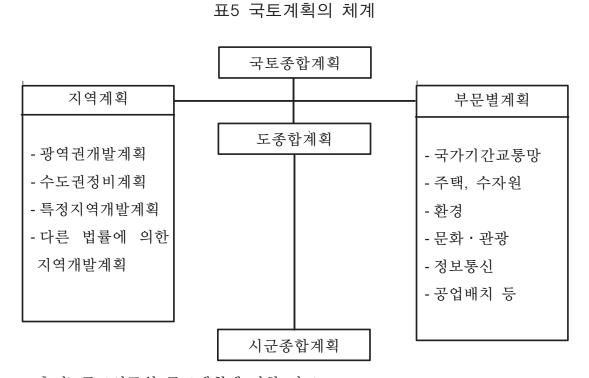
이러한 체계에 의하여 국토계획은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장기적· 효율적인 견지에서 전국토를 이용·관리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이 를 위해서는 계획과 계획 간의 상호 연계가 중요하다.

# 2) 국토계획의 상호관계

국토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립되는 국토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27) 따라서 국토종합계획은 도종합계획 및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며, 부문별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도종합계획은 당해 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수립되는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된다. 그러므로 도의 경우에는 국토종합계획이 도종합계획과 시군종합계획의 2단계에 걸쳐 구체화되는데 비하여,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에는 도종합계획에 해당하

<sup>27)</sup> 정태용 전게(25) p.39.

는 계획이 없으므로 국토종합계획은 시군종합계획에 의하여 구체화된다.<sup>28)</sup> 또한 시군종합계획은 그 성질상 도시계획의 의미를 갖는다.이에 의하여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에 관하여 수립되는 다른 법률, 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의 이용·관리 및 보전의 기본이 되는 계획이다. 이러한 관계를 나타낸 것이 표5이다.



출전)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에 관한 자료

이상과 같이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국토계획은 국토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장래의 국토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이념과 그 나아가 야할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국토계획의 체계는 지방 행정구역 등을 반영하여 구분되고 있다. 이것은 국토의 장기적인 발

<sup>28)</sup> 정태용 전게(25) pp.39-40.

전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방의 역할이 중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국토계획의 방향성, 즉 균형 있는 국토발전을 꽤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속적인 국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활성화가 큰 관건이라 하겠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 왔는지 이하에서 고찰하기로 하겠다.

## 제 2 절 우리나라의 지역 활성화와 특색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역 활성화에 관한 논의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 국가경쟁력의 강화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즉 지방분권이란 측면<sup>29)</sup>에서 논한다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립과 자율 및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지역 스스로가 수립·시행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으로서 지방활성화를 추진하는데 있다. 그리고 국가경쟁력의 강화라는 측면<sup>30)</sup>에

<sup>29)</sup> 지방분권에 관해서는 많은 문헌이 있으나 여기서는 그 일부만을 소개하기로 하겠다. 이병훈 「지방분권의 이념과 현실-중앙과 지방의 권한과 기능 및 책임의 배분을 중심으로-」(공법연구 제33집제1호, 2004), 김순은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개혁방향」(지역사회 통권제47호, 지역사회연구소, 2004) p.68이하, 김순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분석:Q방법론의 적용」(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7권제1호, 1997) p.5이하및 일본의 지방분권과의 비교분석에 관해서 김순은 「정부혁신과 지방분권 개혁 한 일간 비교분석」(한국행정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2004) p.1이하, 김순은 「지방분권 정책의 집행에 영향을 미친 요인분석: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지방정부연구 제7권제4호, 2003) p.7이하 참조.

<sup>30)</sup> 국가경쟁력에 관해서는 이용헌 「국가경쟁력문제의 실상과 정책과제」(한국행정학보 제28권제1호, 한국행정학회, 1994) p.285이하, 최영출 「국가경쟁력의 결정요인」(한국거버넌스학회 2006년 하계공동학술대회, 한국거버넌스, 2006) p.689이하, 이정식「발전국가론의 퇴조와 지역균형발전전략에 관한 연구」(수도권연구 제2호, 안양대학교수도권발전연구소, 2005) p.1이하 특히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전략에 관해서는 p.6이하 참조, 강현수 「참여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평가와 향후과제」(한국지방정부학회 2006년도 하계학술대회논문집, 한국지방정부학회, 2006) p.219이하 참조.

서 본다면 종래의 국가와 국가 간의 상호교류 및 연계에서 지역과 지역 간, 나아가 광역적 지역간의 교류와 연계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세계화에 맞추어 지방이 주역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의하여 지역 활성화가 오늘날 국가정책의 중요한 관건이며 그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국가와 지방에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의미에 근거하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기단체의 노력은 사회적 변화에 순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목표설정과 계획적인 추진뿐만 아니라, 어떠한 계획 내지는 기본원칙과 연계하여 구체화할 것인가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지역 활성화 정책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고 있다. 즉, 지역 활성화정책은 지역의 경제, 산업, 문화, 교육, 주거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① 글로벌특구조성을목적으로 하는 정책, ② 지역산업진흥을 위한 정책, ③ 낙후지역개발을 위한 정책, ④ 농어촌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나누어 시행되고 있다.이는 국가발전의 비전과 목표가 유연한 분권형 국가건설 및 역동적인다극분산형 사회의 건설을 통한 국가 재도약의 실현과 지역발전에 의한 자립형 지방화의 추진에 근거하고 있다31)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 활성화정책을 꽤함으로써 종래의 중앙정부 주도의 성장지향적 정책과 그로인하여 발생한 폐단을 수정·보완하여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것이 현재 추진 중인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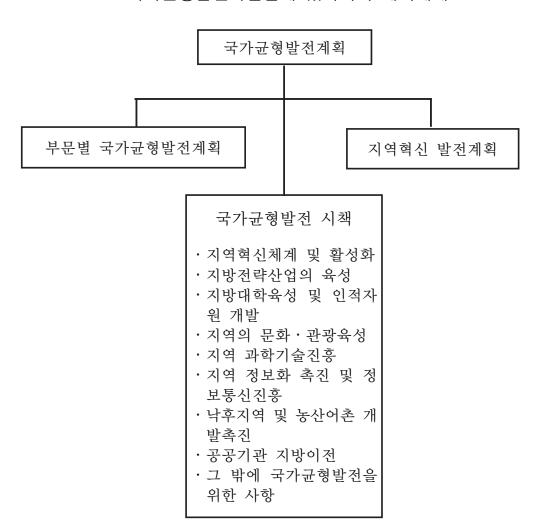
<sup>31)</sup> 김동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활성화정책과 발전방안」(월간부동산소식, 2005) p.7.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특색이라고 하겠다.<sup>32)</sup> 이에 관한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이하와 같다.

첫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에 있어서는 지역간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혁신 및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하여 자립형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부문별 국가균형발전계획안과 지역혁신 발전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정부가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법제4조). 또한 지방주도의 균형발전계획의 수립, 즉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특성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혁신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을 규정하고(법제6조·제7조), 지역혁신체계구축, 지역전략산업의 선정 및 육성, 지방대학의 육성, 지역과학기술의 진흥, 지역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 지역문화·관광육성,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등 다양한 균형발전시책을 정하고 있다(제10조~제20조). 이것을 간략하게 나타내면 표6과 같다.

<sup>32)</sup>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토지공법상의 과제에 관해서 김향기 교수는 국가균형발전시책이 거시적 차원에서 합리적이고 구체적이며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나타난 쟁점과 과제들을 하위법령이나 이 법의 구체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고 보완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균형발전은 특별법에 의해서만 완수될 수 없는 것으로서 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법이 상호 유기적 연계속에 병행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하고 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시책과 지방분권화는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분권·자치 추진과 균형발전정책의 연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김향기「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토지공법의 과제」(토지공법연구 제40회 학술대회, 토지공법, 2004) p.1이하 참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개념차이를 구별하고, 이들이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이행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는 논자로서 염명배「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재정-국세·지방세 재분배문제를 중심으로」(재정논집 제18집제2호,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4) p.23이하 참조.

#### 표6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있어서의 계획체계



그리고 이러한 발전계획, 발전시책 및 사업의 관리·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자문기관으로서 국가균 형발전위원회를 설치(법제22조)하고 있다.

둘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두었다. 이 특별회계는 그 동안 각 부처에서 추진하던 균형발전 관련 사업들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 하여 지역개발, 혁신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사업의 수요자 인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우선순위를 최대한 반영하여 국가균형발전 시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33) 국가균형발전특별 회계는 지역혁신체계구축, 지역전략산업육성, 지역인력양성 및 연구개 발 등 지역혁신과 특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혁신사업계정과 낙후 지역개발, 농산어촌개발, 개발제한구역 관련사업 등 지역 간 차별시정 을 위한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국가균형발전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04년~2008년)을 수립·추진하여 왔다. 제1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은 지역혁신체계구축, 혁신클러스터육성,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 등 혁신기반 구축으로 지역특성화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정책방향을 두고 있다.

이후 매년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에서 제시한 비전과 핵심과제를 구체화하여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프로그램의 마련과 집행실적 평가를 통한 효과적이고 공정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자원부는 2004년 11월말「2005년도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중앙 및 지역에 통보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였다.34) 시행계획의 수립과정을 통해 중앙의부문별 균형발전 시책이 지역별 시행계획에 바탕을 두고, 지역별 혁신사업이 중앙의 정책방향에 부합될 수 있도록 양자 간의 정합성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35)

이와 같이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에 대한 성과는 무엇이며 어떠한 개선점이 있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sup>33)</sup> 송두범「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과와 과제」(서울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서울행정학회, 2007) p.266,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상세하게 논의한 논문으로서 배준구 「참여정부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추진과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2004년 하계세미나 발표논문집, 서울행정학회, 2004) p.445이하 참조. 34) 국가균형발전의원회·사업자원부 2005년도 국가균형발전에 과하 역차보고서 2006

<sup>34)</sup> 국가균형발전위원회·산업자원부, 2005년도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6, p.101, 송두범 전게(33) p.266 참조.

<sup>35)</sup> 국가균형발전위원회·산업자원부 전게(34) P.124, 송두범 전게(33) pp.266-267 참조.

관하여 논하는 이유는 계획추진과정 및 추진실적의 평가를 통하여 어는 정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 제 3 절 지역 활성화를 위한 성과와 개선점

## (1) 지역 활성화를 위한 성과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 활성화정책은 효율성 중심의목표와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형편성 중심의목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할 과제로서 정책적 조화가 간단한 것은 아니다. 특히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목표의 달성은 매우 어려운 과제로 역대 정부마다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성과가 거의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단계에 있는 지역 활성화정책에 대한 성과를 정량적으로 종합평가한다는 것<sup>36)</sup>은 아직 이르지만, 지금까지의 논점을 토대로 하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그 성과를 어느 정도 도출해 낼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였다.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sup>37)</sup>,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라는 측면에서 국토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수 있는 분산, 분권, 지역특성화정책 들을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혁신주도형 지역발전의 인식이 정립되었다. 혁신주도형 지역 발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종래의 지역발전과 차별화하는 핵심개념으로 서 국가경제발전전략도 연결되어 있다.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기존

<sup>36)</sup> 송두범 전게(33) pp.268-269.

<sup>37)</sup>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조치로서 국토균형발전특별법외에 지방분권특별법,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이 있다.

의 물량투입에 의한 외형중심의 발전전략과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기술 및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이다. 즉 시설투자와 같은 요소투입형 전략보다는 지역구성원의 창의와 학습을 바탕으로 유형·무형의 혁신을 창출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과제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혁신주도형 지역발전이 가장 강조되는 분야는 전략산업의 선정 및 육성과 클러스터 조성이며, 또한 낙후지역의 활성화에서도 강조되고 있다.38)

셋째,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지방의 역할이 증대되었다. 이는 지역중심의 계획체계를 확립시킴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다. 즉 지방의 창의성과 다양성, 자율과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한 계획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하여 중앙정부의 통재와 의존형 시스템으로부터 탈피하여 지방의 자율과 자립에 의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꽤하여 국토의균형 있는 발전을 달성하고자 함에 있다.

# (2) 지역 활성화정책의 개선점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균형 있는 국토형성을 위한 지역 활성화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개선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상당수의 지역 활성화정책과 관련된 계획의 위치설정 및 추진방식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관해서 몇 가지 개선점을 정리하면 이하 와 같다.

첫째,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위치설정이 문제이다. 국가가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계획적인 국토의 이용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가능 하다. 즉 국토계획의 체계 하에서 국가균형발전을 모색하여야 한다.

<sup>38)</sup> 이원섭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국토연구원 국토, 2005) pp.62-65, 송두범 전게(33) p.269.

이는 국토계획의 기본원칙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현행의 국토계획은 국토종합계획, 도·시종합계획, 부문별계획, 지역계획이란 세부계획을 정하여 국토의 이용 및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균형발전계획은 상기의 어떠한 계획과 일치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계획으로 보아야할 것인지 불분명하다. 왜냐하면 국가균형발전계획의 개념을 「지역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발전역량을 증진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수립 및이행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국토계획이란 측면에서 국가균형발전계획을 파악하고 있지 않는 것에 기인한다.

둘째, 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되어 있다.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즉 행정기관의역할도 중요하나,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가유도 및 민간 사업자의 유치가 주요한 관건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역할은 계획의 목표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이 지역 활성화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제안,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 사업자를 지역 활성화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제감면 등의 조치와 더불어 계획제안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투자재원의 규모 및 확보방안이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지역혁신을 위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을 지역혁신 발전계획의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재원조달을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 방자치단체의 판단에 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원과 물자, 인력이 풍부하며 교통운송수단이 확보된 지역에서는 재원확보가 원활하게 진행되나, 그렇지 못한 지역에 있어서는 이것이 지역 활성화에 큰 장애로

등장한다. 이는 지역의 격차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재 원확보가 곤란한 지역에 대한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계획과 계획 간의 상충성 문제<sup>39)</sup>가 발생할 수 있다.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고 이행하는 지역혁신 발전계 획에 있어서 지역의 특성화를 너무 강조하면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상 충가능성이 발생할 수 도 있다. 또한 이는 국가경쟁력강화라는 정책 목표와도 상충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조기(早期)에 완화될 수 있도록 정책 상호간의 연계와 조정, 목표가치관의 관계설 정 등 그 해결방안을 강구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우리의 국토계획, 지역 활성화정책과 그 특색 및 성과 그리고 개선점에 관하여 간략하나마 고찰하였다. 이에 의하면 우리의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방안으로서의 지역 활성화정책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정책을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전술한 일본의 사항이 참고가되리라 생각한다. 이하에서는 이에 의한 시사점을 논하기로 하겠다.

<sup>39)</sup> 국가경쟁력과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의 상충성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곽채기 「국가경쟁력과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의 상충성 및 해결방안」(한국행정학회, 2003) p.1이하 참조.

# 제 6 장 시사점: 국토계획에 근거한 지역활성화를 위한 방안

지역 활성화의 근본적 취지는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고, 지역의 특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국가는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자신들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어떠한 활성화정책이 적절한가를 강구한다. 이러한 노력은 상술한 바와 같이 우리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일본에 있어서도 동일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지역 활성화정책은 오늘날의 행정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임과 동시에, 세계적 추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우리와 일본이란 국한된 논의만으로 세계적 추이라고 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지역 활성화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꽤하기위한 방안으로서 중요한 관건임을 생각하면 결코 무의미나 발상은 아니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일본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 활성화, 특히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국토균형발전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이에 관해서는 우리와 조금 색다른 취지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약간의 논의를 정리하고 그 시사점을 논한후에,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 활성화정책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논하기로 하겠다.

먼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적 지역 활성화정책과 국토형성계획의 연계라 할 수 있다. 양자의 관계는 얼듯 보면 서로 상이한 계획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광역적 지역 활성화정책을 국토형성계획, 특히 국토형성 지방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국토형성계획의 체계, 환언하면 광

역지방계획에서는 블록마다 국토형성에 관한 방침, 목표 또는 광역의 견지에서 필요한 구체적 시책과 이를 위한 검토사항으로서 국토에서의 블록의 위치설정, 각 블록의 특성을 고려한 역내 도시와 지역의 연계방안, 독자적인 전략에 근거한 중점적, 선택적인 자원투입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sup>40)</sup>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당해 지역의 활성화가 관건이며 이를 위한 제조치가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기반정비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라 하겠다.

이에 의하면 일본에서의 광역적 지역 활성화정책은 단일계획으로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합계획으로서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즉 국토형성을 위한 계획을 전국계획과 지방계획으로 구분하고 후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광역적 지역 활성화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기반정비에 관한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에서의 광역적 지역 활성화정책은 국토계획의 일환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한편 우리의 지역 활성화정책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계획으로서의 이미지보다는 각각의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단일계획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로 인하여 지역 활성화정책이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추진방향이 국토계획과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하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지역의 선택과 책임에 의한 개성 있는 발전을 실현시켜야 한다. 지역이 그 특성에 맞는 개성 있는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

<sup>40)</sup> 일본에서의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법률의 제정에 대한 국회논의는 제166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4호의 회의록을 참조하기 바란다. http://www.shugiin.go.jp/itodb\_kaigiroku.nsf/html.

본적으로 지역 스스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분권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주체성을 될 수 있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자유로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나아가 지역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주권자로서 지역사회의 형성에 참가할 수 있는 제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향후 NPO 및 지역구성원에 의한 협의회 등이 다양한 형태로 지역형성에 공헌할 것이 기대되므로 이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계획책정에 이러한 부분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할 때 지역주민의 의견을 집결하고 이를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계획의 책정과정뿐만 아니라 계획→실시→평가라는 전체의 과정을 통한 지역주민의 적절한 참가를 촉진함과 동시에, 계획의 합리적・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의 충실이 요구된다고 하겠다.41)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화 및 조정을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우리의실정에 맞는 국토 및 지역의 형성이라는 공동의 목적의식을 갖고 상호 협력한다는 의식 하에 각각의 역할을 존중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화·조정이라는 파트너십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지역 활성화정책을 추진하여야만 진정한 의미로의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국가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sup>41)</sup> 国土審議会政策部会土地政策審議会計画部会「21世紀の国土計画のあり方」国土審議会政策部会土地政策審議会計画部会의 審議総括報告書 p.7.

# 참고문헌

# - 한 국 -

- 강현수, 「참여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평가와 향후과제」(한국지방정부하 회 2006년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지방정부학회, 2006)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산업자원부, 「2005년도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연 차보고서」(2006)
- 곽채기, 「국가경쟁력과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의 상충성 및 해결방안」 (한국행정학회, 2003)
- 김동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활성화정책과 발전방향」(월간부 동산소식, 2005)
- 김순은,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개혁방향」(지역사회통권 제47호, 지역사회연구소, 2004)
- \_\_\_\_\_,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분석: Q방법론의 적용」(정 책분석평가학회보 제7권제1호, 1997)
- \_\_\_\_\_\_, 「정부혁신과 지방분권개혁 한·일간 비교분석」(한국행정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2004)
- \_\_\_\_\_, 「지방분권 정책의 집행에 영향을 미친 요인분석:일본의 사례 를 중심으로」(지방정부연구 제7권제4호, 2003)
- 김향기, 「국가균형특별법과 토지공법의 과제」(토지공법연구제40회학술 대회발표집, 토지공법, 2004)
- 배준구, 「참여정부 지역 균형발전의 추진과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를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2004)

- 성경륭,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한국행정학회, 2003)
- 송두범, 「참여정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과와 과제」(서울행정학회 동계 학술대회, 2007)
- 정태용, 『국토계획법』(한국법제연구원, 개정제2판, 2007)
- 염명배,「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재정·국세·지방세 재배 분문제를 중심으로」(재정논집 제18집제2호, 한국재정·공공경 제학회, 2004)
- 이병훈, 「지방분권의 이념과 현실-중앙과 지방의 권한과 기능 및 책이 배분을 중심으로-」(공법연구 제33집제1호, 2004)
- 이원섭,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평가와 향후과제」(국토연구원, 국토, 2005)
- 이용헌, 「국가경쟁력문제의 실상과 정책과제」(한국행정학회보 제28권 제1호, 한국행정학회, 1994)
- 이정식, 「발전국가론의 퇴조와 지역균형발전전략에 관한 연구」(수도권 연구 제2호, 안양대학교 수도권발전연구소, 2005)
- 최영철, 「국가경쟁력의 결정요인」(한국거버넌스학회 2006년 하계공동 학술대회 발표집, 한국거버넌스, 2006)

#### -일본-

- 伊藤敏安「地方にとって「国土の均衡ある発展」とは何であったか」(第11回 地域計経済システム研究会、2002)
- 大西 隆「広域地方計画の展望と課題」(都市問題、2005.7.)
- 大森麻衣「地域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に係る交付金制度創設-広域的地域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に関する法律案-」(立法と調査、2007)

- 小田 清 「国土総合開発法の改正と国土形成計画法の問題点-国土形成計画法の制定に関連して-」(開発論集第79号、2007)
- 太田 誠「東北アジアの環境変化と地域的個性の発揮-企業の国際ネットワークの視点と物流インフラ整備-」(都市計画第263号、2006)
- 国土交通省国土計画局総合計画課「新しい国土形成計画について」(人と国土21、2005)
- 瀬田史彦「国土・広域地方計画体系からみた国土形成計画の可能性と課題」(都市計画第263号、2006)
- 平 修久「人口減少下の国土計画」(都市計画第263号、2006)
- 土地総合研究所『日本の土地法』(ぎょうせい、1996)
- 中島俊介「広域地方計画に向けて」(都市計画第263号、2006)
- 林 宣嗣「地方分権と国土形成計画-全国計画と広域地方計画の課題と展望」(都市計画第263号、2006)

宮本 恭「地域の自立と国土形成計画」(都市計画第263号、2006)

# - 인터넷 사이트 -

http://www.mlit.go.jp/kokudokeikaku/21kokudo/sanko04.html

http://www.mlit.go.jp/kisha06/02/021116/03.pdf

http://www.mlit.go.jp/kokudokeikaku/21kokudokeikaku soukatsu.pdf

http://www.kantei.go.jp/tiiki/index.html

http://www.mlit.go.jp/pubcom/pubcom85 html

http://www.shugiin.go.jp/itodb kaigiroku.nsf/html

http://www.kantei.go.jp/jp/singi/tiikisaisei/kouhyou/070427/2 1 40.pdf

부 록

#### <부 록 1>

#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에 관한 법률

#### 목 차

제 1 장 총칙(제1조-제3조)

제 2 장 기본방침(제4조)

제 3 장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정비계획 및 이것에 근거한 조치 제 1 절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정비계획의 작성 등(제5조·제6조) 제 2 절 민간거접 시설정비계획사업계획의 인정 등(제7조-제18조) 제 3 절 교부금(제19조-제21조)

제 4 장 잡칙(제22조·제23조) 제 5 장 벌칙(제24조) 부 칙

# 제 1 장 총 칙

# (목 적)

제1조 이 법률은 인구구조의 변화, 경제사회생활권의 광역화, 국제화의 진전 등 경제사회정세의 변화에 수반하여, 전국 각 지역의 광역에 걸친 활발한 사람의 왕래 또는 유통을 통한 지역의 활성화(이하광역적 지역 활성화라고 함)도모가 중요해지는 것에 비추어, 광역적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를 추진하기위해, 국토교통성대신이 책정하는 기본방침에 관해서 정함과 더불어, 도도부현이 작성하는 광역적지역 활성화 기반정비계획에 근거한 민간거점 시설정비사업계획의 인정 및 거점시설관련기반시설정비사업 그 외의 사업 또는 사무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교부금의 교부 등의 조치

를 강구하여, 그로인해서 지역사회의 자립적인 발전 및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정 의)

- 제2조 이 법률에 있어서 「광역적 특정 활동」이란, 다음에 열거하는 활동을 말한다.
  - 다음에 열거하는 활동으로써, 당해 활동이 행해지는 지역외
     의 광역으로부터 내방자를 증가시키거나, 또는 당해 광역에
     걸치는 물자의 유통을 촉진하는 효과가 높은 것
    - 가. 국제적 또는 전국적인 규모의 회의, 연수회, 상품 전시회 시 또는 스포츠 경기회의 개최
    - 나. 국제관광지 그 외의 주요한 관광지에서 행해지는 다음에 열거하는 활동
      - (1) 관광여객에 대한 관광안내, 숙박 그 외의 역무제공에 관한 사업 활동(상당수의 사업자에 의해 행해지는 것에 한정함)
      - (2) 문화적 자산의 전시 또는 전통예능 공연
    - 다. 고등교육단계의 교육활동
    - 라. 국제적 또는 전국적 규모의 공업제품 제조에 관한 사업 활동(상당수의 사업자에 의해 행해지는 것에 한정함) 또는 공동연구개발
    - 마. 가부터 라까지 언급한 것 이외에, 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활동
  - 그. 전호에서 열거한 것 이외에, 동호에서 규정하는 활동을 행하는 자 또는 동호에서 규정하는 내방자의 편리를 증진하는 화객운송에 관한 사업 활동으로써,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것

- 2. 이 법률의 「거점시설」이란, 지역에서 광역적 특정 활동의 거점 이 될 수 있는 시설로써,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하는 활동의 구분 에 대응하여, 각각 당해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전항 제一호 가에서 언급하는 활동 회의장시설, 연수시설, 상품전시회시설 또는 스포츠시설
  - 二. 전항 제一호 나(1)에서 열거하는 활동 일단지의 관광시설
  - 三. 전항 제一호 나(2)에서 열거하는 활동 교양문화시설
  - 四. 전항 제一호 다에서 열거하는 활동 교육시설
  - 五. 전항 제一호 라에서 열거하는 활동 공업단지 또는 연구개발 시설
  - 六. 전항 제一호 마 또는 제二호에서 열거하는 활동 동항 제一호 마 또는 제二호의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활동 종류에 따라서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시설
- 3. 이 법률의 「거점시설관련기반정비사업」이란, 도도부현이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다음에서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업으로써, 거점시설의 정비를 특히 촉진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지구(이하 중점지구라고함)구역에서 민간사업자 그 외의 자에 의한 거점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시행에 관련하여 당해 사업과 일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 것
    - 가. 도로법(昭和27년,1957년 법률 제180호) 제3조제2호의 일 반국도 또는 동조 제3호의 도도부현도의 신설, 개축 또는 수선에 관한 사업
    - 나. 철도사업법(昭和61년,1986년 법률 제92호) 제8조제1항에 서 규정하는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에 관한 사업
    - 다. 공항정비법(昭和31년,1956년 법률 제80호) 제2조제1항제2 호에서 규정하는 제2종공항 또는 동항 제3호에서 규정하

- 는 제3종공항에 있어서 동법 제8조제1항 혹은 제4항 또는 제9조제1항 혹은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공사에 관한 사업
- 라. 항만법(昭和25년,1950년 법률 제218호) 제2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항만시설 중, 수역시설, 외곽시설, 계류시설, 임항교통시설, 항만공해방지시설,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처리매립호안, 폐유처리시설 및 동법 제12조제1항제11호의3의 해양성 폐기물처리시설에 한정함) 또는 항만환경정비시설의건설 또는 개량에 관한 사업
- 마. 도시공원법(昭和31년,1956년 법률 제79호) 제2조제1항에 서 규정하는 도시공원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사업
- 바. 하수도법(昭和33년,1958년 법률 제79호)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공공하수도, 동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유역하수 도 또는 동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도시하수로의 설치 또는 개축에 관한 사업
- 사. 하천법(昭和39년,1964년 법률 제67호)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1급하천의 개량공사 혹은 수선 또는 동법 제5조제 1항에서 규정하는 2급하천의 개량공사에 관한 사업
- 아. 공영주택법(昭和26년,1956년 법률 제193호)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하는 공영주택의 건설 혹은 동조 제12호에서 규정하는 공동시설의 건설 등에 관한 사업, 대도시지역에서의 주택 및 주택지의 공급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昭和50년,1975년 법률 제67호)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하는 도심공동주택공급사업(제20조에 서는 단지「도심공동주택공급사업」이라고 함), 특정우량임대주택의 공급촉진에 관한 법률(平成5年,1993년 법률 제52호) 제18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사업, 중심시가지 활성화에 관한 법률(平成10年,1998년 법률 제92호) 제3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에 관

한 사업 또는 고령자의 거주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平成13年,2001년 법률 제26호) 제4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의 정비에 관한 사업

차. 토지구획정리법(昭和29년,1954년 법률 제119호)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또는 도시재개발법(昭和44년,1969년 법률 제38호)에 의한 시가지재개발사업

카. 그 외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사업

- 그. 전항에서 언급하는 것 이외, 거점시설에서 행해지는 광역적특정 활동에 수반하는 사람의 왕래 또는 물자 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동호 가에서 라까지 및 카에서 열거하는 사업(동호 카에서 열거하는 사업으로써,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한정함)
- 4. 이 법률에서의 「공공시설」이란, 도로, 공원, 광장 그 외 정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에 도모되는 시설을 말한다.

(국가, 지방공공단체 등의 협력의무)

- 제 3 조 국가는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해 기반정비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 될 수 있도록, 아시아지역 그 외 지역에서 해상유송망의 거점 이 되는 항만 및 주요한 국제항공노선에 필요한 공항, 전국적인 간선도로 그 외의 교통시설로서 고속도로용으로 제공되는 것의 종합 적 또는 체계적인 정비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 2.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의 추진에 있어서 지역의 자주성을 존중함과 더불어, 각각의 지역의 개성 및 특색의 신장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 3.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의 추진에 있어서 광역적 특정 활동을 담당해야할 인재육성 및 확보 에 관한 시책, 새롭게 기업을 창립하여 행하는 광역적 특정 활동

- 의 개시에 대한 지원에 관한 시책, 도시와 농어촌과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책 그 외 관련하는 광역적 특정 활동의 촉진에 관한 시책과의 연계를 도모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 4. 국가, 지방공공단체,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활동을 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비영리활동법인(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平成10年,1998년 법률 제7호)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을 말함. 제5조제7항에 있어서도 동일함), 광역적 특정활동을 행하는 민간사업자 그 외의 관계자는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를 중점적,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상호연계를 도모하며 노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제 2 장 기본방침

- 제4조 국토교통대신은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함)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 2. 기본방침에 있어서는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 一.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에 관한 기본적 방향
    - 二. 거점시설 선정 및 중점지구 설정에 관한 기본적 사항
    - 三. 거점시설 관련기반설비 정비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
    - 四. 관련된 광역적 특정 활동의 촉진에 관한 시책과의 연계에 관한 기본적 사항
    - 五.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에 관계되는 도도부현 간 그 외 관계자간의 연계 및 협력에 관한 기본적 사항
    - 六. 다음 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정비 계획의 작성에 관한 기본적 사항

- 七. 전 각호에서 열거하는 것 외의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에 관한 중요사항
- 3. 기본방침은 국토형성계획법(昭和25년,1950년 법률 제205호)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전국계획과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
- 4. 국토교통대신은 기본방침을 정하려고 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 5. 국토교통대신은 기본방침을 정한 때는 지체 없이 이것을 공표하지 않으면 안 된다.
- 6. 전2항의 규정은 기본방침의 변경에 관해서 준용한다.

# 제 3 장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정비계획 및 이것에 근거한 조치

# 제 1 절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정비계획의 작성 등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정비계획)

- 제 5 조 도도부현은 그 지역에 관해서, 기본방침에 근거해,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광역적 지역 활성화기반정비계획이라고 함)을 작성할 수 있다.
  - 2.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정비계획에는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한다.
    - 一.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본정비계획의 목표
    - 그. 거점시설에 관한 사항(전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거점시설 정비를 특히 촉진할 필요한 장소에서는 그 거점시설에 관한 사항 및 중점지구 구역)
    - 三. 제一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거점시설 관련기반 시설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四. 전호의 거점시설 관련기반시설정비사업과 함께 그 효과를 한층더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 또는 사무(이하 사업 등 이라고 함)에 관한 사항

#### 五. 계획기간

- 六. 전 각호에서 언급하는 것 이외의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써 국토교통 성령으로 정하는 것
- 3.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정비계획은 국토형성계획, 북해도종합 개발계획, 오끼나와진흥계획,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 및 환경기본 계획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또한 법령에 근거한 거점시설 관련기반시설정비계획사업에 관한 방침 및 계획에 있어서는 국토교 통성령에서 정하는 것에 적합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
- 4.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정비계획 중 도시계획법(昭和43년,1968년 법률 제100호)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구역에 관계되는 부분은 동법 제6조의2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구역의 정비, 개발 및 보전방침 및 동법 제7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도시재개발방침 등과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 5. 도도부현은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정비계획을 작성하려고 할때는 미리 관계 시정촌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 6. 도도부현은 제2항제3호에서 열거하는 사항에 제2조제3항제2호에서 열거하는 사업(동항 제1호가, 나 또는 카에서 열거하는 사업(동호 카에서 열거하는 사업에서는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한함)으로 그 외의 도도부현과의 경계에 관계되는 것에 한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려고 하는 때는 당해 사항에 관해서 미리 당해 그 외의 도도부현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 7. 제2항제4호에서 언급하는 사항에는 도도부현이 실시하는 사업 등에 관계되는 것을 기재하는 것 외에 필요에 따라서 시정촌, 지

방자치법(昭和22년,1947년 법률 제67호) 제28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부 사무조합 혹은 광역연합, 항만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무국 또는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활동을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비영리활동법인 혹은 민법(明治29年,1896년 법률 제89호) 제34조의 법인 혹은 이것에 준하는 것으로써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시정촌 등이라고 함)가 실시하는 사업 등(도도부현이 당해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여 그 추진을 도모하는 것에 한함)에 관계되는 것을 기재할 수있다.

- 8. 도도부현은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정비계획에 시정촌 등이 실 시하는 사업 등에 관계되는 사항을 기재하려고 하는 때는, 당해 사 항에 관해서 미리 당해 시정촌 등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 9. 도도부현은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정비계획을 작성한 때는 지체 없이 이것을 공표함과 더불어, 관계 시정촌에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정비계획의 사본을 송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 10. 제5항부터 전항까지의 규정은 광역적 지역 활성화 정비기반계 획의 변경에 관해서도 준용한다.

(광역 지방계획협의회에 있어서의 협의 특례)

- 제6조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정비계획을 작성한 도도부현을 포함하는 광역지방계획협의회(국토형성계획법 제10조제1항의 광역지방계획협의회를 말함. 이하 같음)는 동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당해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정비계획에 관해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협의할 수 있다.
  - 2. 전항의 규정에 의해서 광역지방계획협의회가 동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관해서 협의하는 경우에는 국토형성계획법제10조제2항 중 「가지는 자」라고 하는 것은「가지는 자 및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에 관한 법률」(平成19年,2007년 법률 제52호)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정비계획의 실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자」로 한다.

# 제 2 절 민간거점시설 정비사업계획의 인정 등

(민간거점시설 정비사업계획의 인정)

- 제7조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정비계획에 기재된 중점지구 구역에서 거점시설 정비에 관한 사업(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에 관한 사업(이것에 부대하는 사업을 포함함)으로 공공시설의 정비를 수반하는 것에 한함)으로써 당해 사업을 시행하는 토지(수면을 포함함)구역(이하 사업구역이라고 함)의 면적이 정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것(이하 거점시설 정비사업이라고 함)을 시행하려고 하는 민간사업자는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당해 거점시설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민간거점 시설정비사업계획이라고 함)을 작성하며 국토교통대신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 2. 민간거점시설 정비사업계획에는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 一.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二. 거점시설의 개요
    - 三.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에 관한 사업의 개요
    - 四.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의 개요 및 당해 공공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리자로 되어야 할 자
    - 五. 공공착수의 시기 및 사업시행기간
    - 六. 용지취득계획
    - 七. 자금계획

八. 전 각호에서 언급하는 것 외에, 거점시설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써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것

(민간거점시설 정비사업계획의 인정기준 등)

- 제8조 국토교통대신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인정신청이 있었던 경우에는, 당해 신청에 관계되는 민간거점시설 정비계획사업이다음에서 열거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그것을 인정을 할 수 있다.
  - --. 당해 거점시설 정비사업이 기본방침 중 제4조제2항제2호에서 언급하는 사항 및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정비상업 중당해 중점지구의 구역에 관계되는 제5조제2항제2호에서 언급하는 사항에 비추어서 적절한 것
  - 二. 당해 거점시설 정비사업이 도시에 있어서 토지의 합리적 또한 건전한 이용 및 도시기능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
  - 三. 공사착수시기, 사업시행기간 및 용지취득계획이 당해 거점 시설 정비사업을 확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것
  - 四. 당해 거점시설 정비사업을 적확하게 시행하기에 충분한 경 리적 기초 및 기술적 능력 그 외의 능력이 있는 것
  - 2. 국토교통대신은 전항의 인정(이하 계획인정이라고 함)을 하려 할 때는, 미리 관계 지방공공단체 및 당해 거점시설 기반정비사업의 시행에 의해서 정비되는 공공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리자가 되어야 할 자(이하 공공시설의 관리자 등이라고 함)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 (계획인정의 통지)

제 9 조 국토교통대신은 계획인정을 하려 할 때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관계 지방공공단체, 공공시설의 관리자 등 및 민간도시개발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昭和62년,1987년 법률 제62호. 이하 민간도시개발법이라고 함)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민간도시개발추진기

구(이하 민간도시기구라고 함)에 통지함과 더불어, 계획인정을 받았던 민간사업자(이하 인정사업자라고 함)의 성명 또는 명칭, 사업구역, 사업시행기간 그 외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지 않으면 안 된다.

#### (민간거점 시설정비사업계획의 변경)

- 제10조 인정사업자는 계획인정을 받았던 민간거점시설 정비사업계획 (이하 인정계획이라고 함)의 변경(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을 제외함)을 하려고 할 때는, 국토교통성대신의 인정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 2. 전2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 (보고 징수)

제11조 국토교통대신은 인정사업자에 대해서 인정계획(인정계획의 변경이 있었을 때는 그 변경 후의 것. 이하 동일함)에 관계되는 거점 시설 정비사업(이하 인정사업이라고 함) 의 시행상황에 관해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지위 승계)

- 제12조 인정사업자의 일반승계인 또는 인정사업자로부터 인정사업에 관계되는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권 그 외 당해 인정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권원을 취득한 자는 국토교통대신의 승계를 받아서 당해 인정사업자가 가지고 있던 계획인정에 근거한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 2. 국토교통대신은 전항의 승인을 하려고 할 때는 미리 관계 지방 공공단체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 (개선명령)

제13조 국토교통대신은 인정사업자가 인정계획에 따라서 인정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인정할 때는 당해 인정사업장에 대해서 상당 기간을 정해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계획인정 취소)

- 제14조 국토교통대신은 인정사업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는 계획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 2. 국토교통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인정을 취소할 때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관계 지방공공단체, 공공시설의 관리자 등 및 민간도시기구에 통지함과 더불어, 공표하지 않으면 안 된다.

## (민간도시기구가 행하는 거점시설 정비사업 지원업무)

- 제15조 민간도시기구는 민간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 각호에서 열거하는 업무 및 민간도시개발법 제14조의8제1하의 규정에 의해 국토교 통대신의 지시를 받아서 행하는 업무 외에 민간사업자에 의한 거점 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대신의 승인을 받아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를 행할 수 있다.
  - 다음에 열거하는 방법에 의해 인정사업자의 인정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공공시설 및 이것에 준하는 피난시설, 주차장 그 외의 건축물 이용자, 도시 거주자 및 체재자 그 외의 관계자의 편리 촉진에 기여하는 시설의 정비에 필요한 비용금액의 범위 내에 한함)에 관해서 지원하는 것
    - 가. 인정사업자(오로지 인정사업자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또는 합동회사에 한함)에 대한 출자
    - 나. 오로지 인정사업자로부터 인정사업의 시행에 의해서 정비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이하 이호에 있어서 인정건축물 등이라고 함)를 취득하고, 당해 인정건축물 등의 관리 및 처분을 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합동회사 또는 자산의 유동화에 관한 법률(平成10年,1998년 법률 제105호) 제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특정목적회사에 대한 출자

- 다. 부동산 특정 공동사업법(平成6年,1994년 법률 제77호) 제 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거래(인정건축물 등을 정비하고, 또는 정비된 인정건축물 등을 취득하며, 당해 인정건축물 등의 관리 및 처분을 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에 한함)를 대상으로 하는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특정 공동사업계약에 근거한 출자
- 라. 신탁(수탁한 토지에 있어서 인정건축물 등을 정비하고, 당해 인정건축물 등의 관리 및 처분을 행할 것을 내용으 로 하는 것에 한함)의 수익권 취득
- 마. 가부터 라까지에서 언급하는 방법에 준하는 것으로써 국 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방법
- 二. 인정사업자에 대해서, 필요한 조언, 알선 그 외의 원조를 행하는 것
- 三. 전二호에서 열거하는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 2. 전항의 규정에 의해서 민간도시기구가 동항 각호에서 열거하는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민간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 중「제4조제1항 각호」라고 하는 것은「제4조제1항 각호 및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에 관한 법률(平成19年,2007년 법률 제52호.이하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정비법이라고 함) 제15조제1항 각호」로, 민간도시개발법 제12조 중「제4조제1항 각호」라고 하는 것은「제4조제1항 각호 및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정비법 제15조제1항 대2호」라고 하는 것은「제4조제1항 각호」로, 민간도시개발법 제14조 중「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라고 하는 것은「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라고 하는 것은「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및 광역적 지역활성화 기반정비법 제15조제1항제1호」로, 민간도시개발법 제20조제1호 중「제11조제1항」이라고 하는 것은「제11조제1항(광역적 지역활성화 기반정비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읽어 바꾸어서적용하는 경우를 포함)」으로 한다.

3. 민간도시기구는 제1항제1호에서 열거하는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행해야 한다.

(인정사업자에 의한 도시계획결정 등의 제안)

- 제16조 인정사업자는 도시계획법 제15조제1항의 도도부현 혹은 시정 촌 또는 동법 제87조의2제1항의 지정도시(동법 제22조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항의 국토교통대신(동법 제85조의2의 규정에 의해 동항에서 규정하는 국토교통대신의 권한이 지방정비국장 또는 북해 도개발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서는 당해 지방정비국장 또는 북해도개발국장) 또는 시정촌)(다음 조에서는 도시계획결정권자,로 총칭함)에 대해서 당해 인정사업의 시행효과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해 필요한 다음에 언급하는 도시계획결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에서는 당해 제안에 관계되는 도시계획의 초안을 첨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 一. 도시계획법 제12조의4제1항제1호의 지구계획에 관한 도시계획
  - 二. 토지구획정립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도시계획
  - 三.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시가지재개발사업에 관한 도시계획
  - 四. 도시계획법 제4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도시시설로 정하는 것 에 관한 도시계획
  - 五. 그 외 정령으로 정하는 도시계획
  -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이하 계획제안이라고 함)은 당해 인정 사업에 관계되는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한 일단(一團)의 토지구역에 관해서, 다음에 열거하는 것에 따라 국토교통성령으 로 정하는 것에 의해 행하는 것
    - --. 당해 계획제안에 관계되는 도시계획의 초안내용이 도시계획 법 제13조 그 외의 법령 규정에 근거한 도시계획에 관한 기 준에 적합한 것

- 그. 당해 계획제안에 관계되는 도시계획의 초안대상이 되는 토지(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공공시설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함. 이하 이 조에서 동일함)의 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또는 차지권(借地權)(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대항요건을 구비한 지상권 또는賃借權(임시설비 그 외 일시사용을 위해 설정된 것이 명확한 것을 제외함)을 말함. 이하 이 조에서 동일함)을 가지는 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고, 또한 동의한 자가 소유하는 그구역 내의 토지 지적과 동의한 자가 가지는 차지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토지의 총지적과의 합계의 3분의 2이상인 것
- 3. 전항 제2호의 경우에서 소유권 또는 차지권이 몇 명의 공유에 속하는 토지가 있는 때는 당해 토지에 관해 소유권을 가지는 자 또는 차지권을 가지는 자의 수를 각각 일(一)로 보고, 동의한 소유권을 가지는 자의 공유 지분비율의 합계 또는 동의한 차지권을 가지는 자의 공유 지분비율의 합계를 각각 당해 토지에 대해 동의한 자의 수로 보며, 당해 토지 지적(地積)에 동의한 소유권을 가지는 자의 공유 지분비율의 합계 또는 동의한 차지권을 가지는 자의 공유 지분비율의 합계를 곱해서 얻은 면적을 당해 토지에 대해서 동의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 지적 또는 동의한 자가 가지는 차지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토지 지적으로 여긴다.

# (계획제안을 근거로 한 도시계획 결정 등)

제17조 도시계획결정권자는 계획제안이 행해졌을 때는 지체 없이 당해 계획제안을 근거로 한 도시계획결정 또는 변경(계획제안에 관계되는 도시계획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현하게 되는 도시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을 말함. 제3항에 있어서도 동일함)의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며, 당해 도시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 안을 작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 2. 도시계획결정권자는 당해 계획제안을 근거로 한 도시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계획제안에 관계되는 도시계획요소의 내용 일부를 실현하게 되는 도시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을 말함)을 하려고 할경우에서 도시계획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이러한 규정을 동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규정에 의해도시계획 안을 도도부현 도시계획심의회 또는 시정촌 도시계획심의회에 부의하려고 하는 때는, 당해 도시계획안과 더불어, 당해계획제안에 관계되는 도시계획요소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 3. 도시계획결정권자는 당해 계획제안을 근거로 한 도시계획결정 또는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 및 그 이유를 당해 계획제안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 4. 도시계획결정권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통지하려고 할 때는 미리 도도부현 도시계획심의회(도시계획결정권자인 시정촌에 시정촌 도시계획심의회가 설치되어 있을 때는 당해 시정촌 도시계획심의회)에 당해 계획제안에 관계되는 도시계획요소를 제출하여 그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광역지방계획협의회에 있어 인정사업의 원활 또한 확실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

- 제18조 인정사업자는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광역지방계획협의회에 그 인정사업의 원활 또는 확실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 2. 전항의 협의를 실시할 것이 요구되었던 광역지방계획협의회에 관한 국토형성계획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적용에 대해서는 동항 중「관계 각 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것은,「관계 각 행정기관 및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에 관한 법률(平成19年,2007

년 법률 제52호) 제18조제1항의 협의가 요구되었던 동항의 인정 사업자,로 한다.

3. 광역지방계획협의회는 제1항의 협의가 요구되었던 경우에 당해 협의가 검토된 때 또는 당해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던 때는 그 결 과를 당해 협의결과를 얻기에 이르지 않았을 때는 당해 협의를 실시할 것이 요구되었던 날부터 6월을 경과할 때 마다 그간의 경 과를 즉시 당해 협의가 요구되었던 인정사업자에게 통지하는 것 으로 한다.

## 제 3 절 교부금

(교부금의 교부 등)

- 제19조 도도부현은 다음 항의 교부금을 충당하여 광역적 지역 활성화기반정비사업계획에 기재된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업 등실시(동호의 사업 등에 있어서는, 시정촌 등이 실사하는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부담을 포함함. 다음 항에 있어서도 동일함)할때는 당해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정비계획을 국토교통대신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 2. 국가는 도도부현에 대해서 전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정비계획에 기재된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업 등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제2조제3항제1호 가에서 아까지 규정하는 시설의 정비 상황 그 외의 사항을 기초 로서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의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 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 3. 전항의 교부금을 충당하여 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관해서는 도로법 그 외의 법령 규정에 근거해 국가부담 또는 보조는 당해 규정에 관계없이 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4. 전3항에서 정하는 것 이 외에 제2항의 교부금의 교부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한다.

(교부금에 관계되는 도심공동주택공급사업에 의해 건설된 주택의 집 세 또는 분양가격 등)

제20조 대도시지역에서의 주택 및 주택지 공급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1조의5제1항에서 규정하는 인정사업자인 도부현이 전조 제2항의 교부금을 충당하여 실시하는 도심공동주택공급사업에 의해 건설되는 주택에 대해서 동법 제101조의11의 규정적용에 관해서는 동조 제1항 중「전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라고 하는 것은「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에 관한 법률(平成19年,2007년 법률 제52호) 제19조제2항의 교부금」으로, 동조 제3항 중「전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라고 하는 것은「광역적 지역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의 교부금」으로 한다.

(교부금에 관계되는 고령자용 우량임대주택에 관해서의 주지조치)

제21조 도도부현이 제19조제2항의 교부금을 충당하여 준비하는 고령 자거주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에 관해 동법 제54조의 규정적용에 관해서는, 동조 중「제49조, 제51조제4항, 제52조제1항 혹은 전조 또는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보조 또는 부담을 받아서 정비하거나, 또는 집세를 감액하는 J것이라고 하는 것은「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에 관한 법률(平成19年,2007년 법률 제52호) 제19조제2항의 교부금을 충당하여 정비하거나,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를 받는집세를 감액한다」라고 한다.

# 제4장잡칙

(국토교통성령에의 위임)

제22조 이 법률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한다.

#### (경과조치)

제23조 이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명령을 제정하고 또는 개폐하는 경우에서는 그 명령으로 그 제정 또는 개폐에 수반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 소요의 경과조치를 정할 수 있다.

# 제 5 장 벌 칙

- 제24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고 또는 허의보고를 한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혹은 사람의 대리인, 사용인 그 외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사람의 업무에 관해서 전항의 위반행위를 했을 때는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해서 동항의 형을 과한다.

# 부 칙

####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해서 3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검 토)

제 2 조 정부는 이 법률 시행 후 10년 이내에 이 법률의 시행상황에 관해서 검토를 하며 그 결과에 근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공영주택법의 일부개정)

제 3 조 공영주택법의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에 다음의 1호를 추가한다.

三.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에 관한 법률(平成19年, 2007년 법률 제52호) 제19조제2항의 교부금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 및 공익사단법인 및 공 익재단법인의 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수반하는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제4조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 및 공익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의 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수반하는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平成18年, 2006년 법률 제50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목차 중「제448조」를「제448조의2」로 개정한다.

제11장 중 제448조의 다음에 다음 1조를 추가한다.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제448조의2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에 관한 법률(平成19年, 2007년 법률 제52호)의 일부 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항 중「혹은 민법(明治29年,1896년 법률 제89호) 제34조의 법인」을「일반사단법인 혹은 일반재단법인」으로 개정한다.

# <부 록 2>

#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7년 8월 3일 국토교통성령 제74호)

#### (광역적 특정활동)

- 제1조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1호마의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활동은다음과 같다.
  - --. 박람회, 예술발표회, 예능 및 스포츠 흥행, 그 외에 개최되는국제적 또는 전국적인 규모 또는 지명도가 있는 것의 실시
  - 그. 해당 활동이 실시되는 지역 외에 전국의 도시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 이주 또는 도시에서의 주소 외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것을 촉진하는 활동 또는 일본 또는 지역 고유의 자연, 문화 등에 관한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활동
  - 三. 국토형성계획법제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광역지방계획구역 또는 홋카이도(北海道) 혹은 오키나와현(沖縄県) 구역 내외의 소비자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 업에 관련하는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도모함에있어 중추가 되는 것 또는 전문적인 의료활동
  - 四. 국제적 또는 전국적인 규모의 물자유통에 관련하는 사업활동(상당수의 사업자에 의해 실시되는 것에 한함)으로서 전항에서 규정하는 구역에서 물자유통의 중추가 되는 것

五. 전 각호에서 열거한 것 외에 해당 활동이 실시되는 지역외의 광역으로부터 방문자를 증가시켜 혹은 해당 광역에 걸치는 물자유통을 촉진하는 효과가 높고, 도도부현에서 광역적지역 활성화를 도모함에 중추가 되는 활동으로서 국토교통대신이 인정한 것

## (화객운송에 관한 사업활동)

제 2 조 법제2조제1항제2호의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사업활동은 철 도사업법, 도로운송법 그 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인가, 면 허, 등록 그 외의 처분을 받아 행하는 화객운송에 관한 사업활동으 로 한다.

#### (거점시설)

- 제 3 조 법제2조제2항제6호의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 활동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각호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 --. 제1조제1호에서 열거하는 활동 교양문화시설, 스포츠시설그 외에 동호에서 규정하여 개최가 실시되는 시설
  - 二. 제1조제2호에서 열거하는 활동 교류시설, 집회시설 또는 체 험학습시설
  - 三. 제1조제3호에서 열거하는 활동 상업시설 그 외에 동호에서 규정하는 사업활동을 행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상당수의 사 업자가 이용하기 위한 시설 또는 의료시설
  - 四. 제1조제4호에서 열거하는 활동 유통업무시설
  - 五. 제1조제5호에서 열거하는 활동 동호에서 규정하는 활동거점 이 되는 시설로써 국토교통대신이 인정하는 것
  - 六. 전조에서 열거하는 활동 교통시설(거점시설 관련기반시설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시설을 제외 함) 또는 유통업무시설

(거점시설 관련기반시설 정비사업)

제 4 조 법제2조제3항제1호 또는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一. 궤도법에 의한 궤도시설 건설 또는 개량에 관한 사업
- 二. 하천환경 정비에 관한 사업으로 국토교통대신이 정하는 것
- 三. 주택시설 정비 또는 주택시가지 정비개선에 관한 사업으로 국토교통대신이 정하는 것

(광역적 특정활동에 따른 사람의 왕래 또는 물자의 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 5 조 법제2조제3항제2호의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전조제 1호에서 열거한 사업으로 한다.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정비계획의 기재사항)

제 6 조 법제5조제2항제6호의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一.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정비사업의 명칭
- 二. 거점시설 관련기반시설 정비사업에 관련하여 실시되는 사업에 관한 사항
- 三. 환경보전 배려에 관한 사항
- 四.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정비사업의 목표의 달성상황에 관련하는 평가에 관한 사항 그 외에 국토교통대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정비사업이 적합한 거점시설 관련기반시설 정비사업에 관한 방침 또는 계획)

제 7 조 법제5조제3항의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거점시설 관련기반 정비사업에 관한 방침 또는 계획은 다음 사항과 같다.

- 一. 고속자동차국도법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비사업
- 그. 항만법제3조의2에서 규정하는 기본방침 및 동법제3조의3에서 규정하는 항만계획
- 三. 하수도법제2조의2에서 규정하는 유역별 하수도정비종합계획 및 동법제4조제1항 및 제25조의3제1항의 인가에 의한 사업계획 四. 하천법제16조에서 규정하는 하천정비기본방침 및 동법제16 조의2에서 규정하는 하천정비계획
- 五. 주생활기본법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생활기본계획

(그 외의 도도부현의 의견수렴 사업)

제 8 조 법제5조제6항의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4조제1호 에서 열거한 사업으로 한다.

(특정비영리활동법인 또는 민법제34조의 법인에 준하는 자)

- 제 9 조 법제5조제7항의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법인격을 갖고 있지 않는 사단으로 대표자에 관한 정함이 있고 또한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실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
  - 그.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2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주식회 사로 공공시설 그 외의 공익적시설의 정비 등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
  - 三. 전2호외에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를 추진하는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을 실시하는 자로서 도도부 현의 지사가 지정한 자

(민간거점시설 정비사업계획 인정 등 신청)

제10조 법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신청을 하려고 하는 자는 별 도양식제1에 다음 도서를 첨부하여 이것을 국토교통대신에게 제출

#### 하여야 한다.

- --. 방위, 도로 및 목표로 되는 지물(地物) 및 사업계획을 표시 한 부근 지도
- -. 축적, 방위, 사업구역, 부지의 경계선, 부지내에서의 건축물의 위치 및 사업 구역내에 정비하는 공공시설 및 이에 준하는 피난시설, 주차장 그 외 건축물의 이용자, 도시거주자 및체재자 그 외의 관계자의 편리의 증진에 기여하는 시설의 배치를 표시한 사업 구역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배치도
- 三. 축척, 방위, 배치 및 설비의 개요를 표시한 건축하는 건축물 의 각층 평면도
- 四. 거점시설 정비계획의 공정표
- 五. 거점시설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 구역내의 토지 및 부근지의 주민에 대한 설명회 개최 상황 및 해당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해당 거점시설 정비사업에 관한 의견 개요
- 六. 축척, 방위, 사업구역, 신청자의 종전부터 소유권, 차지권 그외의 사용 및 수익을 목적으로 할 권리(다음호에서 「소유권 등」이라고 한다.)를 가지는 토지 및 신청자의 소유권의 취득 또는 차지권 그 외의 사용 및 수익을 목적으로 한 권리 취득 혹은 설정을 하려고 하는 토지의 경계선 및 사업 구역내의 건축물의 위치를 표시한 사업 구역내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배치도
- 七. 신청자가 사업 역내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 등을 가지는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 그 외의 신청자가 사업 구역내에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 八.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 대해서는 등기사항 증명서, 정관 및 직전 3년의 각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수 지의 상황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서류

- 九.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에 대해서는 주민표의 초본 또는 이를 대신하는 서면,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조서 및 소득의 상황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서류
- 十. 거점시설 정비사업에 의해 정비되는 건축물과 관련되는 수 지의 전망을 기재한 서류
- 十一. 거점시설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조달의 상대방 및 해당 상대방마다 대략의 조달금액 및 그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
- 十二.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에 관한 법령시행령 제2조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 거점시설 정비사업에서는 동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그 외의 거점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이 동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고, 또한 이러한 거점시설 의 정비에 관한 사업이 동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도서
- 十三. 전 각호 외에 법제8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을 밝히기 위해서 국토교통대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 2. 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변경의 인정신청을 하려고 하는 자는 별도 양식 제1에 의한 신청서에 전항 각호의 도서 중 변경과 관련되는 것을 첨부하여 이것을 국토교통대신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전항 제13호중「법제8조제1항 각호」라고 있는 것은「법제10조제2항에 대해 준용하는 법제8조제1항 각호」로 대체 한다.

(민간거점시설 정비사업계획 기재사항)

제11조 법제7조제2항제8호의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一. 거점시설 정비사업 명칭 및 목적
- ... 해당 거점시설 정비사업이 기본방침 중 법제4조제2항제2호의사항 및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정비계획 중 해당 중점지구

구역과 관련되는 법제 5 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대조하여 적절 한 것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참고가 되어야 할 사항

三. 해당 거점시설 정비사업이 도시에서의 토지의 합리적 또는 건전한 이용 및 도시 기능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참고가 되어야 할 사항

# (민간거점시설 정비사업 공표)

제12조 법제9조(법제10조제2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一. 거점시설 정비사업 명칭 및 목적
- 그. 인정사업에 관한 건축물 및 그 부지, 공공시설 정비에 관한사업 개요

(민간거점시설 정비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제13조 법제10조제1항의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다음과 같다.

- 一. 지역의 명칭변경 또는 지방변경에 따른 변경
- 二. 전2호외에 거점시설 정비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국토교 통대신이 인정하는 변경

(인정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에 대한 지원방법)

제14조 법제15조제1항제1호마에서 정하는 방법은 인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인정사업자인 특정목적회사에 대한 출자로 한다.

(민간도시기구가 실행하는 거점시설 정비사업 지원업무 기준)

제15조 법제15조제3항의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일반 금융 기관이 실행하는 금융 등을 보완하는 것으로 한다.

#### (도시계획의 결정 등 제안)

- 제16조 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을 하는 자는 이름 및 주소 (법인에서는 그 명칭 및 주요 사업소 소재지)를 기재한 제안서에 다음 도서를 첨부하여 이것을 도시계획결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一. 도시계획 초안
  - 二. 별도 양식제2에 의한 인정사업에 관한 계획서
  - 三. 인정사업에 관한 다음의 도서
    - 가.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및 사업 구역을 표시한 부근 배치도
    - 나. 축척, 방위, 사업구역, 부지의 경계선, 부지내에서의 건축 물의 위치 및 사업 구역내에 정비하는 공공시설의 배치를 표시한 사업 구역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배치도
  - 四. 제1의 도시계획 초안내용이 해당 인정사업의 시행효과를 한 층 높이기 위해 필요한 이유를 나타내는 서류
  - 五. 법제16조제2항제2호의 동의를 얻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 (교부금 금액)

제17조 법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이하「교부금」이라 한다) 은 도도부현마다 교부하는 것으로 하며 그 금액은 광역적 지역 활성 화 기반정비계획마다 다음의 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A \times C \times T \times 0.5$

(이식에서 A, C 및 T는 각각 다음 수치를 나타낸다.

A: 해당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정비계획에 기재된 거점시설에 서도도부현 경계 혹은 해안선까지 최단 거리(해당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정비계획에 복수의 거점시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큰 값) 또는 10킬로미터 중 어느 하나가 큰 수치를 반경으로 하는 엔(円)의 면적

- C: 법제2조제3항제1호가에서 아까지에 규정하는 시설 정비에 관한 일년도에서의 단위면적당 표준적인 투자액으로 국토교통 대신이 정하는 금액
- T : 해당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정비사업 계획기간)
- 2. 전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교부금의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대신이 정한다.

# 부 칙

# (시행기일)

1. 이 성령은 법의 시행일(2007년8월6일)로부터 시행한다.

양식 제1(제10조 관계) 생략

양식 제2(제16조 관계) 생략

## <부 록 3>

# 지역자립 · 활성화교부금 교부요강

#### 제 1 통 칙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2007년 법률 제52호. 이하「법」이라고 한다.)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교부금의 교부에 관해서는 법 및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2007년국토교통성령 제74호. 이하「규칙」이라고 한다.) 및 보조금등과 관련되는 예산집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1955년 법률 제179호. 이하「적정화법」이라고 한다.), 보조금등과 관련되는 예산집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1955년 정령 제255호. 이하「적정화 법시행령」이라고 한다.) 그 외의 법령 및 관련통지 외에 이 요강에서 정하는 것에 의한다.

#### 제 2 정의

1. 지역자립 · 활성화교부금

도도부현이 작성한 법 제5조제1항의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정비계획(이하「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정비계획」이라고 한다.)에 근거하는 사업 또는 사무(이하「사업 등」이라고 한다.)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법 제19조제2항, 규칙 제17조 및 이요강이 정하 바에 따라 국가가 교부하는 교부금을 말한다.

#### 2. 교부대상사업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정비계획에 기재된 별표에서 언급하는 사업 등 (다른 법률 또는 예산제도에 근거한 국가부담 또는 보조 를 얻어 실시하는 사업 등을 제외하다.)을 말한다.

## 3. 교부금사업자

지역자립·활성화 교부금의 교부를 받아 교부대상사업을 실시하는 도도부현 및 도도부현에게 그 경비의 일부 보조를 받아 별표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사업 등을 실시하는 시정촌 등(법 제5조제 7항에 정하는 시정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 제 3 교부대상

지역자립・활성화교부금의 교부대상은 도도부현으로 한다.

#### 제 4 교부기간

지역자립·활성화 교부금을 교부하는 기간은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 정비계획마다 지역자립·활성화 교부금을 받고 교부대상사업 이 실시되는 연도로부터 대략 3~5년으로 한다.

#### 제 5 교부한도액

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의 액수는 규칙 제17조제1항에 근거하여 산출한 금액 및 다음 식에 의해 산출된 액수를 넘지않는 것으로 한다.

#### 교부한도액 = 1/2×α

이 경우에서 α는 다음 식에 의해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하며 또한 재정법(1947년 법률 제34호)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는 공채 대상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1)  $\alpha = 9/10 \times (A+B)$
- 2)  $\alpha = 12/11 \times A$

A : 별표 제4항에서 제16항까지의 사업(이하「기간 사업」이라고 한다.)마다 교부 한도액을 산출하는 경우의 요건 란(爛)이 정 하는데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계한 금액

B : 별표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사업 등 (이하「제안 사업」이라고 한다.)마다 교부 한도액을 산출하는 경우의 요건 란(欄)이

정하는데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계한 금액 또한 도도부현이 시정촌 등에 대해 제안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를 부담하는 경우에서는 상기 B에서의 「교부 한도액을 산출하는 경 우의 요건」을 「간접 교부의 경우 사업에 필요한 금액」라고 한다.

## 제 6 지역자립·활성화교부금의 단연도 교부금액

1. 연도마다의 지역자립·활성화 교부금의 교부금액(이하 「단연도 교부금액」라고 한다.)은 다음 식에 의해 산출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 한다.

단연도 교부금액 = 교부한도금액×C-D

C : 지역 자립·활성화 교부금이 교부되는 연도 말에 교부대상 사업 진척율의 전망

D: 전년도말까지 교부된 지역자립·활성화교부금의 총액 진척율: 교부대상사업의 사업비에 대한 집행사업비의 분할

#### 2. 교부금액 조정

지역자립・활성화 교부금의 교부 후 진척율로 변경이 있을 경우지역자립・활성화 교부금의 교부 목적에 반하지 않는 이상 당해 연도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과 교부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서는 차년도 이후에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연도에 교부된 교부금이 당해 연도에서 변경된 집행예정사업비를 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 제 7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정비사업 제출 등

1. 지역자립·활성화 교부금의 교부를 받아 교부대상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도도부현은 법 제4조제1항의 기본방침 등에 근거하여다음 사항을 기재한 광역목표 지역 활성화 기반정비계획을 작성하고 해당 계획을 국토교통대신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정비사업 목표
- (2) 거점 시설에 관한 사항(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정비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거점시설의 정비를 특히 촉진할 것이 필 요한 경우에는 그 거점시설에 관한 사항 및 중점 지구의 구역)
- (3) 광역적 특정활동에 관한 사항
- (4) 기간사업(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정비사업계획의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필요한 거점시설 관련기반시설 정비사업을 말함.)
- (5) 제안사업(거점시설 관련기반시설 정비사업과 일체로 되어있고 그 효과를 높이는데 필요한 사업 등을 말함.)
- (6) 계획기간
- (7)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정비사업 명칭
- (8) 교부기간에서 각 교부대상사업의 개산(概算)사업비
- (9) 관련사업(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정비사업의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 교부대상사업에 관련하여 실시되는 교부대상사업 이외 의 사업 등을 말함.)
- (10) 교부기간
- (11)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정비사업의 정비방침
- (12)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정비사업의 목표달성상황에 있어 평가에 관한 사항
- (13) 그 외에 필요한 사항
- 2. 국토교통대신은 도도부현으로부터 전항의 규정에 의해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정비계획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대한 지역자립·활성화 교부금의 교부 및 한도액에 대해서 판단하여 그 결과를 해당 도도부현에 통지한다.
- 3. 기간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2항에서 정하는 거점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의 시행에 관련해 일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사업 또는 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광역적 특정활동에 수반하는

사람의 왕래 또는 물자 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에 한정된다. 또한 제4의 교부기간 내에 일정한 성과를 올릴 수 없는 대규모사업은 기간사업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4. 전3항의 규정은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정비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해서 준용한다.

#### 제 8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정비계획 평가

- 1. 도도부현은 교부기간 종료 시에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정비계 획의 목표달성상황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며 이것을 공표함과 동시에, 국토교통대신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 교부기간의 중간 연도에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 2. 국토교통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았을 때는 도도부 현에 필요한 조언을 할 수 있다.

### 제 9 교부신청

- 1. 적정화법 제5조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시기는 매회계년도를 정하는 것으로 하며 이것을 공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도부현에 통지한다.
- 2. 적정화 법시행령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동항 제1호 및 제2 호에서 열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항의 서류에 기재하는 것을 필 요로 하지 않는다.
- 3. 적정화법제5조의 신청서양식은 별도로 정한다.

#### 제10 교부금의 교부결정

적정화법제6조제2항의 통상 필요로 하는 기간은 30일로 한다.

#### 제11 교부금교부의 조건

국토교통대신은 교부금의 교부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관해 조건을 부여하는 것으로 한다.

- (1) 교부금사업에 필요한 경비배분 변경(다음 조에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을 제외함.)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대신의 승인을 받아야 만 한다.
- (2) 교부금사업 내용변경(다음 조에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을 제외 함.)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대신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교부금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대신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교부금사업이 예정기간 내에 완료하지 않는 경우 또는 교부금 사업의 수행이 곤란해졌을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대신에 보고 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 (5) 교부금사업이 완료했을 경우에 기계, 기구, 가설물 그 외의 비품 및 재료가 잔존할 때는 국토교통대신의 승인을 거쳐 해당 사업의 완료 후 이것과 동종의 다른 보조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정비계획에 근거해 해당 물건의 잔존 가격과 관련되는 국비 상당액을 산출하여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 (6) 교부금에 대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예산의 예산 과목별 계상금액을 분명히 하는 조서를 작성해 두어야 한다.
- (7) 도도부현은 교부금사업과 관련되는 간접 교부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대신이 교부금의 교부결정에 교부한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첨부해야 한다.
- (8) 그 외에 필요한 사항

## 제12 비용배분 등 경미한 변경

- 1. 제11(1)의 경미한 변경은 다음과 같다.
  - (1) 사무비를 공사비로 유용
  - (2) 인건비 또는 여비에서 청비(廳費)(식량비를 제외) 또는 공사잡비로 유용

- 2. 제11(2)의 경미한 변경은 다음 사항 이외의 변경으로 교부금 금액에 변경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1)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정비계획 내용에 상당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
  - (2) 청비 중 식량비의 증액

#### 제13 신청취하

도도부현은 적정화법 제9조제1항에 의해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교부금의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해 30일을 경과하는 날까지 국토교통대신에 제출 하며 신청 취하의 양식은 따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 제14 실적보고

- 1. 적정화법 제14조의 전단규정에 의한 보고는 교부금 사업완료 날 (교부금사업 폐지승인을 받은 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기산해 1개월을 경과한 날 또는 교부금사업의 완료일이 속하는 국 가회계연도의 차년도 4월10일까지 완료 실적보고서에 보조금등 정산 조서, 보조금등 수입조서, 잔존 물건조서 그 외에 참고가 되어야 할 자료를 첨부하여 이것을 국토교통대신에 제출한다. 다만, 국 토교통대신이 이 기일에 곤란한 특별한사유가 있다고 인정했을 때는 보고기일을 교부금사업의 완료일이 속하는 국가회계 연도의 차년도 6월말까지 연기할 수 있다.
- 2. 적정화법 제14조의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교부금의 교부결 정과 관련되는 국가회계연도의 차년도 4월30일까지 연도 종료 실 적 보고서에 보조금등 수입조서를 첨부하여 이것을 국토교통대신 에 제출한다.
- 3. 제1항의 완료 실적보고서 및 전항의 연도 종료 실적보고서의 양식은 별도로 정한다.

### 제15 처분의 제한을 받는 재산

적정화 법시행령 제13조제1호에서 제3호까지 열거하는 재산 이외기계, 중요기구 그 외의 재산으로 적정화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그 처분에 대해 국토교통대신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것은 별도로정한다.

## 제16 처분의 제한을 받는 기간

적정화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기간은 별도로 정한다.

#### 제17 감독 등

- 1. 국토교통대신은 도도부현에 대해 도도부현 지사는 해당 도도부현 이 보조하는 시정촌 등에 각각 그 시행하는 교부대상사업에 관해 적정화법 그 외의 법령 및 이 요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한도에 보고 혹은 자료제출을 요구 또는 그 시행하는 교부대상사업의 시행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권고, 조언을 할 수 있다.
- 2. 국토교통대신은 도도부현에 대해 도도부현 지사는 해당 도도부현 이 보조하는 시정촌 등에 대해 각각 그 시행하는 교부대상사업에 감독상 필요가 있으면 그 교부대상사업을 검사하여 그 결과 위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 부 칙

이 요강은 2007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별 표(지역자립・활성화교부금 교부대상사업)

교부대상시업	교부한도액을 산출하는 경우의 요건	간접교부의 경우 사업에 필요한 금액
1. 사 업 활 동조사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정비 계획의 대상이 되는 지구에 서 교부대상사업의 활동 등에 관 하여 조사 등에 필요한 비용	도도부현이 시정촌 등에 대해서 부담하는 비용(사무비를 포함) 금액 범위 내
2 . 지역자 립·활성 화 기반 정비 추 진사업	정보수집·제공활동·사회실험 등의 지역 활성화의 촉진 등에 관한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	상동 (上同)
3 . 지 역 자 립·활성 화 기반 정비 지 원사업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정비 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 한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	상동
4. 토지구 획정리 사업	도도부현이 실시하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다음 요강 등에 서 정하는 채택기준에 적합한 것마다 각각 해당 요강 등에 정해져 있는 비용 1. 공공단체 등 구획정리보조사 업 실시요강(1975년11월1일부 건설성 도구발 제46호) 2. 도시재생 추진사업제도요강 제3편(2000년3월24일부 건설성 경택발 제37-2호, 건설성 도계 발 제35-2, 건설성 주가발 제 23호)	-

교부대상사업	교부한도액을 산출하는 경우의 요건	간접교부의 경우 사업에 필요한 금액
	3. 도시재생 추진사업비 보조교 부요강제3편(2000년3월24일부 건설성 경택주발 제37-3호, 건 설성 도계발 제35-3호, 건설성 주가발 제24호)	
5. 시 가 지 재 개 발 사업	도도부현이 실시하는 시가지재 개발사업으로 다음 요강 등에 서 정하는 채택기준에 적합 하는 것마다 각각 해당 요강 등에 정해져 있는 비용(다만, 3에 있어서는 도로와 관련되는 공공시설관리자부담금에 필요한비용에 한함) 1. 시가지재개발사업비보조(일반회계) 채택기준 2. 시가지재개발사업(조합시행, 재개발회사시행, 개인여행, 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시행 및지방주택공급공사시행)등에관련되는 국고보조 채택기준및실시요강(1986년5월30일부건설성주가발제34호) 3. 시가지재개발사업 등관리자부담금(도로정비특별회계)채택기준 4. 시가지재개발사업비보조(일반회계)교부요강(1974년6월5일부건설성도재발제77호) 5. 시가지재개발사업 등보조요강(1987년5월20일부건설성주가발제47호)	-

교부대상사업	교부한도액을 산출하는 경우의 요건	간접교부의 경우 사업에 필요한 금액
6. 주택시 가지종 합정비 사업	도도부현이 실시하는 주택시가 지 종합정비사업으로 다음 요 강 등에서 정하는 채택기준에 적합 하는 것마다 각각 해당 요강 등에 정해져 있는 비용 1. 주택시가지 종합정비사업제 도요강(2004년4월1일부 국주시 제350호) 2. 주택시가지 종합정비사업보 조금교부요강(2004년4월1일부 국주시 제352호)	-
7. 우량건축 물 등 정 비사업	도도부현이 실시하는 우량건축 물 등 정비사업으로 다음 요강 등에서 정하는 채택기준에 적합 하는 것마다 각각 해당 요강 등 에 정해져 있는 비용 1. 우량건축물 등 정비사업제도 요강(1994년6월23일부 건설성 주가발 제63호) 2. 시가지재개발사업 등 보조요 강(1987년5월20일부 건설성 주 가발 제47호)	-
1	도도부현이 실시하는 주택시가 지 기반정비사업으로 다음 요 강 등에서 정하는 채택기준에 적합 하는 것마다 각각 해당 요 강 등에 정해져 있는 비용 1. 주택시가지 기반정비사업제 도요강(2004년4월1일부 국토정 제3-4호)	-

교부대상사업	교부한도액을 산출하는 경우의 요건	간접교부의 경우 사업에 필요한 금액
	2. 주택시가지 기반정비사업보 조금교부요강(2004년4월1일부 국토정 제3-5호·국주정 제12호)	
9. 공영주 택정비사 업 등	도도부현이 실시하는 공영주택정비사업 등으로 다음 요강 등에서 정하는 채택기준에 적합하는 것마다 각각 해당 요강등에 정해져 있는 비용 1. 공영주택 등 정비사업대상요 강(2005년8월1일부 국주비 제 37호) 2. 지역우량임대주택 정비사업대상요 가요강(2007년3월28일부 국주비 제 161호) 3. 공영주택스톡 종합개선사업대상요강(2005년8월1일부 국주비제 38-3호)	-
10. 공원	도시공원사업의 채택기준에 적합 하는 도도부현이 실시하는 도시공원 정비에 필요한 비용	-
11. 하수도	유역하수도의 채택기준에 적합 하 는 도도부현사업에 필요한 비용	-
12. 하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 천정비에 필요한 비용 1. 도도부현이 실시하는 1급하 천 개량공사 혹인 수선 2. 도도부현이 실시하는 2급하 천 개량공사 혹은 수선	-

교부대상사업	교부한도액을 산출하는 경우의 요건	간접교부의 경우 사업에 필요한 금액
13. 도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 천정비에 필요한 비용  1. 도도부현이 실시하는 일반국 도, 도도부현도의 신설, 개축 또는 수선 2. 도도부현이 실시하는 가로 (街路)사업	-
14. 철도	도도부현이 실시하는 도시·간 선철도 정비사업으로 다음 요 강 등에서 정하는 채택기준에 적합한 것마다 각각 해당 요강 등에 정해져 있는 비용 1. 지하고속철도 정비사업비 보 조교부요강(1981년10월1일부 철재 제24호0 2. 뉴타운철도 등 정비사업비 보 조교부요강(1981년10월1일부 철재 제188호) 3. 지하역 화재대책시설정비사 업비 보조교부요강(2004년7월 1일부 국철시 제39호) 4. 지하철 등 화재정보기반정비 사업비 보조교부요강(2006년4 월7일부 국철시 제8호)	-
15. 항만	항만관리자(도도부현)가 실시하는 다음 사업에 필요한 비용 1. 항만개수사업 2. 항만공해방지대책사업 3. 항만환경정비사업 4. 폐기물처리시설정비사업	-

# 부 록

교부대상사업	교부한도액을 산출하는 경우의 요건	간접교부의 경우 사업에 필요한 금액
16. 공항	도도부현이 실시하는 공항정비 사업, 공항정비사업비 보조금 등 교부요강(1973년7월10일부 공관 제272호의(1)에 의해 교부대상 으로 정하고 있는 비용	-

# <부 록 4>

# 지역자립 · 활성화사업 추진비 취급요령

(2007년 5월 25일 제정)

# 1. 목 적

지역자립・활성화상업 추진비(이하「추진비」라고 한다)는 지역의 자립・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도부현이 작성하는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정비계획에 근거하는 사업에 관련하는 사업 등 추진 등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 2.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정비계획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정비계획이란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말한다.

# 3. 사 업

- (1) 추진비는 공공사업 관계비와 관련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 (2) 용지비 및 보상비는 원칙적으로 추진비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 (3) 추진비에 의한 사업의 국고 보조율은 각 부성에서 정한 해당 사업 종목의 국고 부담률, 국고 보조율에 따른다.(지역개발 특례법 등으로 특별부담율, 보조율의 인상조치가 도모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같다.)
- (4) 추진비에 의한 사업을 소관 하는 부성은 추진비에 의한 사업 완료 후 그 실시 상황을 국토교통성에 보고하여야 한다.

## 4. 조 사

- (1) 추진비는 지역의 자립·활성화 추진에 이바지하는 사업 중 공공 사업 관계비와 관련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사이 며, 민간등과 공동으로 국가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 (2) 추진비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는 부성은 조사 완료 후 그 결과 등을 국토교통성에 보고하며 공표해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성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단계에 중간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성은 추진비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는 부성이 실시하고 있는 다른 관련조사의 결과에 대해서도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3) 추진비에 의한 조사는 해당년도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5. 그 외

- (1) 추진비는 추진비 요구서 작성 요령에 따라 추진비에 의한 사업을 소관 하는 부성 또는 추진비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는 부성이 요구하는 것으로 한다.
- (2) 추진비에 의한 사업을 소관 하는 부성 또는 추진비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는 부성은 국토교통성으로부터 추진비 이월 등을 한후 해당 사업 또는 조사내용 또는 소요금액 변경하려고 할 때는 국토교통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